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 일시 : 2024년 7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민주당**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권향엽, 김성희, 김태선,  
박정, 박홍배,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Q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신^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관 | **민주노총**



## 소 개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 좌 장

**최 정 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 교수,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 현장 증언

**전지 산업 현장 노동자 :**

**정 기 백** (금속노조 삼성 SDI 천안지회 사무장) / 41

## 발 제

**전지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

**현 재 순** (화성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 / 47

**중소제조업 일자리 특성과 예방체계 구축 방안  
: 파견/도급과 일용직 고용을 중심으로**

**박 종 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63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

**류 현 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89

**피해자 지원 대책 :**

**정 경 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피해자 권리 보장팀,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 / 113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요구 발표 :**

**박 세 연** (공동집행위원장) / 123

## 토 론

**정부 관계부처**



아리셀 참사 대책위 공동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 경 수**

예견된 참사에 무대책이었던 정부

참사 이후 한 달. 피해자 권리,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지난 6월24일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화학 폭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자, 17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입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산업단지의 위험은 2015년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에서 이미 드러난바 있었습니다. 매년 100명이 넘게 죽어 나가는 이주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교육과 정보제공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수십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이미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었고, 군납용에서 잦은 폭발 사고로 대책 마련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의 경고들은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방치되다가 23명 노동자들의 생애 같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긴급 점검으로 확인된 것은 아리셀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사 사업장이 똑같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되었으나 ‘리튬 배터리 사업장에 소화기 지원, 다국어로 제작된 비상구 포스터 온라인 제작 배포’ 등과 같은 형식적인 대책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참사의 근본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부 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 점검, 안전대책에는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와의 논의

는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한 주체들이 다시 모여  
참사가 언론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주 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참사로 피해자 유족들이 국적을  
탈리한다는 이유로 체류비 지원등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머리  
를 조아린 아리셀 사측은 이러한 현실을 이용하여 7월5일 단 한차례 30분 상견례 이후  
교섭에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긴급한 요청에서 발표  
와 현장증언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공동주최를 해주신 국회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차별 없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으  
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도 피해자 유족,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송 성 영**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의 젊은 노동자의 영정사진을 마주하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이 젊은 무고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 갔는가? 바로 이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적인 위험한 작업의 이주화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안전교육 부실 등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또한 진상규명의 과정이 아직도 명명백백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의없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껌껌하기만 합니다. 관계 당국에 요구합니다. 반드시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생명을 경시한 관계자들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인명경시, 인권 무시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무대책으로 일관해 참사를 야기시킨 노동경시의 이 정부 또한 살인의 공범입니다. 아리셀 참사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어야 할 안전관리 관계당국 또한 업무방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 유족 및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 라는 산업현장의 인명경시의 부당함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더럽고 때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은 이주노동자가 도맡고 있다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드러났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

본권인 사람으로서의 최후 보루인 인권이 산업현장에서 침해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핑계로 방치한 이 정부는 목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살인의 공동정범입니다. 또한 인권단체나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체불 같은 위반 사항이 있을 때만 일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탓에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의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 제도여서 차후 보완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이 80%가 넘는다는 일부 비공식 통계가 있어 우리 사회의 맨 밑바닥에 이주노동자의 팍팍한 삶을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마주했는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회피로 일관하며 가벼운 처벌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인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참사가 일어났는지 진실규명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유족분들과 함께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며 이주노동자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인권의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이 존중되는 산업현장이 되는 그날까지 연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 호 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입니다.

먼저 아리셀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리셀 참사는 대한민국 노동, 산업안전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선 '이주화'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비한 안전대책 문제, 위장도급 불법파견 관리의 문제, 실효성 부족한 위험성평가의 문제, 전지산업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책의 미비 문제, 피난 안전성 없는 공장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비극입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개선이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와 같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숨지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말 공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

동자만 13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아리셀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피해자 지원, 철저한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이번 참사로 드러난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발표한 제도적 대안들의 실효성을 따져볼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토론회 개최에 함께 애써주신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강득구, 권향엽, 김성희, 김태선, 박정, 박홍배,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허성무 의원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과 발제, 현장증언과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시는 내용 귀하게 듣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아리셀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주 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입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전 안전 점검 및 교육 미이행, 리튬 배터리 전용 특수 소화기 미구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참사 원인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찮은 점들이 많습니다. 왜 노동자들의 소속은 아리셀이 아닌 인력 파견업체인 것인지, 왜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에 대해 유족을 분류하는지.

우리는 이번 아리셀 참사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놓친 것인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우리는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노동행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 또다시 드러난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참사의 진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유가족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과 민주노총, 나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그리고 주관해주신 민주노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참사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비 부족, 고용노동부 등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리셀측은 이번 참사 이틀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1개에서 발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자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튬배터리는 화재시 갑작스러운 폭발과 같은 ‘열폭주’와 주변 배터리를 발열시키는 ‘전이’의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측이 배터리 1개에서의 화재가 발생한 뒤에, 전체 배터리를 점검하고, ‘전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분산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참사를 막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조치도 없었던 점이, 이번 참사의 간접 원인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리튬배터리와 같은 특수한 화재 폭발 특성이 있는 제조업 분야에 전반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조사하고, 매뉴얼을 확충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사 전에 안전보건공단이 위탁한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컨설팅이 있었지만,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맞닥드리고서도, 뼈아픈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자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분야의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 감독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 없이 시행하되, 예방시스템을 갖추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산업현장 참사가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교훈을 되새기고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향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권향엽입니다.

6월 24일, 안타깝게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인한 23명의 희생자분을 애도합니다. 8명의 부상자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사고는 다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일이고 제 가족의 일이더라고요.”

지난 6월 30일, 아리셀 중대재해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만나 뵈었던 유가족분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날 아리셀 유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이날 정부와 사측을 대상으로 9개의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7월 22일인 오늘까지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사측은 유가족 단체의 공식 교섭에는 참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족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망자 23명 중 15명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화성시는 앞서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대규모 참사에 있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성시의 재정능력으로 조치할 사안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화성시의 요청을 윤석열 정부가 수용했다라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 비용에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희생자, 유족 분들께서 피해 보상과 생활비를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는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긴급토론회』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리셀 참사의 원인과 현장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안전, 불법파견,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 등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지산업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 △공장 현장의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긴급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유가족분들의 의견들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성 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먼저 아리셀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리셀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열악한 산업 환경과 노동자 처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인재였습니다. 사업자의 안전 관리는 미흡했고,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은 부실했습니다. ‘값싼 노동’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전대책이 미흡한데도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배경에 불법 파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리셀은 메이셀이라는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위험성 평가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작업 공간에 위험물인 배터리를 방치하면서 도면상으로는 별도 공간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양 기재하는 불법 구조변경 정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리셀 화재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자리를 만들어주신 동료 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와 지혜가 모아질 것 같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동자 처우 문제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이 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과 열악한 처우와 고진 환경에도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며, 저 또한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아리셀 화재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스물세 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립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여러분,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님과 김주영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환노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삶을 꾸리기 위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불법 파견 감독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고, 위험을 떠넘긴 채 보호에 소홀했던 이주노동자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무관심과 책임회피는 노동자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총체적 문제들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은 기업의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아리셀은 성실하게 유가족과 교섭에 임하기는커녕 회유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밝히는데 소극적 자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조장해 온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향후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없이 일하는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각계의 지혜를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하고, 보다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춰, 아리셀 화재 참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중대재해로 남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먼저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희생되신 노동자 스물 세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을 입으신 노동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아리셀 참사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늦게나마 우리 국회-노동계-피해자들이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민주노동총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참사의 본질은 ‘당연함’에 있습니다. 그간 당연한 듯이 암암리에 만연해온 불법 파견,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산업안전감독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는 불법과 방치가 낳은 예견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등지신 사망자 중 무려 열여덟 분이 일용직 파견 이주 노동자입니다. 현재 아리셀은 하청업체에 위장도급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인 탓에, 또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워 안전교육, 긴급조치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불법파견이 없었다면, 또 교육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초장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입니다. 사고 공장이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고 사업장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가 많은 곳에 위치함에도 노동부는 단 한번도 산업안전감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출입구 외에 꼭 설치해야 할 비상구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부가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문 하나만 만들라고 했어도, 희생자 분들께서 출입문 반대방향에서 비참하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재해 참사는 두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방치해온 노동환경의 사각지대를 하나씩 줄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대책은 빈틈 투성이입니다. 대책위가 제시한 재발방지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현장을 대변하지도 못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상누각의 대책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리셀 참사를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또 다른 아리셀 참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단순 사고에 그치지 않고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또, 현임 위원으로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중대재해 참사로 사망하신 스물 세분의 노동자, 그리고 모든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최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삶을 꾸리기 위해 일터에 나와 땀 흘리며 노동했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정부는 이번 참사에서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리셀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공간에 인정심사를 신청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의 사후심사에서도 적정 점수를 받아 올해 2월까지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가 형식상에 그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평균 1,582건에 달하던 불법파견 감독 건수는 윤석열 정부 이후 2020년 636개, 2021년 534개, 2022년 489개, 지난해 465개로 연평균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에스코텍·아리셀은 희생자들의 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그에 따른 고용 관계와 종사 업무 증명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홀한 행정, 중소기업에서 만연한 안전보건 사각지대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모든 요소가 ‘위험한 일터’를 만든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제는 위험의 일용직·이주노동자 전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그로 인한 피해가 노동취약 계층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 마지막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저 역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해 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 노동·존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긴급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그리고 이학영·김주영·강득구·김태선·박정·박홍배·이용우 의원님, 마지막으로 현장발언,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23분의 노동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는 대다수의 사망자가 이주노동자였다는 점, 이들 중 대부분이 인력 공급 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점, 안전교육과 점검·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열폭주 등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위험성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중대재해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포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산안규칙상 존재해야 할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았

고,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2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의 산업안전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동안 연초에 아리셀에 '고위험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하지도, 개선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립을 위해선 체계적인 지도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만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핑계로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토론회 개최가 매우 소중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의 실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와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는 아리셀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인천 서구 을 이용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아리셀 참사로 희생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관리의 부재와 미비한 감독체계로 인한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입니다.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스물세 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분산 보관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이 이번 참사의 간접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는 아리셀 사측에서 리튬배터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 등 위험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안전대책 마련 미흡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공간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점,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도 않았고, 불법파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방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비상구 설치의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점 등 대한민국 제조현장 문제점의 '

백화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유가족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을 도리어 밀어내고 있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도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당사자인 유가족들을 배제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없다면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철저한 시행과 더불어, 사고예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불법파건을 근절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수사당국의 성실한 브리핑 및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학 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긴급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참사는 23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발사고이자, 30년 이주노동자 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위장도급, 화학물질 관리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방치했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입니다.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19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구 반대편에서 발견됐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안전교육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문제입니다. 리튬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위험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참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청업체 아리셀은 하청업체에 위장도급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사 중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사례입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은 사고 발생 위험을 미리 경고했었고, 업체도 자체 점검을 통해 그 위험이 확인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아무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와 노조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귀담아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성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월 24일 일차 전지를 생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해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 공장에서는 이미 4차례의 화재가 발생했고, 아리셀이 납품한 배터리가 3차례나 폭발하는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며 새로운 기술은 빠르고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곳곳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교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실태조사 등으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견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국민께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위험성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리셀 참사에 대한 관심으로 참석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유가족께 위로가 되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셀 참사로 고인이 되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안녕하십니까?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일하는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고개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민  
주노동총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권향엽 김성희 김태선 박정 박홍배 박  
해철 이용우 이학영 허성무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  
주당 한창민 의원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역시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  
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20  
년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건, 2020년 5  
월 삼표 시멘트 컨베이어 벨트 사망사건, 2022년 2월 여천 NCC 공장 사망사건 등을 겪  
으면서도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는 낮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익스프레스 물류공장과 여천 NCC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일용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삼표 시멘트에서 돌아가신 분과 태안 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님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아리셀에서 돌아가신 분들 역시 대부분이 인력사업소에서 소개받은 파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보다 낮은 임금과 위협의 외주화는 더 싼 비용을 요구하였고 어느 공장보다 안전해야 할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은 출구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연히 화성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위협을 외주화하고, 이주화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각 위협의 외주화, 이주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리셀의 참극은 화성, 안산, 울산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공단에서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는 이윤이 아닌 안전과 생명 위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도급 자체가 산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과 산업 안전 취약성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생명과 안전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비정규직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민주노총에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며,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주시는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책위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깊이 있는 발표를 준비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이번 토론회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합니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직후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분들에게 진상규명과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화재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부터 불법 파견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문제제기가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을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현장에 밀어넣는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안전한 노동을 위한 장치는 이에 발맞춰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무시한 불법 파견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등의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에 위배되는 작업 현장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은 하청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23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리튬배터리 완제품이 작업장 이외 별도의 저장공간에만 보관되어 있었다면, 유명무실한 비상계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이 실시되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의 자율 평가로 맡긴 결과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맡긴 결과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한달이 안된 그 짧은 기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적 미비로 각자의 사업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3일 아리셀 산재참사 추모행동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했을 뿐인데 떠나면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하루빨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23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 슬픔을 추스르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의 민낯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참사입니다.

피난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형적 공장 구조, 부실했던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과 현장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었던 리튬 전지 화재 대응매뉴얼 등이 인명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간 정부가 방관해 왔던 이주 노동자 안전 문제와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 역시 이번 참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바로잡았다면 막대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통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을 방기해 온 결과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낳은 참사가 임기 동안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에만 급급했기에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은 정치가 다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마저 내려놓은 지금,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현장의 관점으로 이번 참사를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마련된 오늘의 토론회가 특히 뜻깊습니다. 현장 노동자와 여러 전문가분의 제언을 경청해, 이번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그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앞장서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향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 창 민**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먼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들이 처해 있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부터 부실한 사후대처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마다 산재로 2천 명이 사망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총체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재발견한다고 말하는 편이 차라리 맞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해 화재 현장에서 대피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백여 명이 일하고 있던 아리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거쳐 흘러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리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올해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노동 현장의 악성 관행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아리셀 사업장이 2021년부터 네 차례의 화재 사고를 이미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진도, 노동당국도 아리셀이 위험한 사업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당국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위한 3만 원의 돈조차 내지 않았던 아리셀이 한국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서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가족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아리셀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고,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이용해 업체들끼리 관리 책임을 떠넘겨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노동자가 벌어진 돈을 로펌에 넘겨주고 유가족들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가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사업장에 안전 보장을 위한 맞춤형 대비책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과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일하다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22대 국회에서 끝장내야합니다.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증언**

**전지 산업 현장 노동자**

**정 기 백**

금속노조 삼성 SDI 천안지회 사무장



# 현장증언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 SDI 천안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SDI 천안사업장 소형전지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사무장 정기백입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를 지켜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현장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차 전지부서에서 20년간 원형, 각형, 파우치 전지부서의 생산 및 설비 유지보수, 현업부서 안전 담당자등의 여러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현재 생산 중인 모든 전지는 양극, 음극,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발화와 같은 사고가 발생 되지 않지만 전지는 충방전을 하는 순간부터는 발화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SDI에서는 불량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 단계에서 불량품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모든 제조 회사들이 동일하게 관리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배터리는 잘 사용한다면 우리 삶에 편의를 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지만 제조 및 사용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번 참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품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3장은 배터리 화재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만 미사일 폭격 사진입니다. 배터리는 한번 열폭주로 발화가 발생한다면 미사일 폭격(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생하며, 현재의 소화 장비로는 빠른 진화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화재였습니다.**

과거에도 발생해 왔었고 현재까지도 화재가 발생 중인 배터리 사고는 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전기차, ESS, 핸드폰, 보조배터리, 폐전지, 전지 폐기물 화재 등의 많은 화재를 우리는 봐왔었습니다. “단기간에 진화가 어렵다”, “열폭주는 어떻게 진화 해야하나”, “불량배터리 몇개가 건물을 전소시켰다” 등의 기사를 많이 접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리셀 화재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불량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진화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셀 소식을 처음 접하고 놀란 부분은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전이 된 배터리는 보관 및 취급할 때 별도의 개별 소화 장비가 되어있는 안전한 곳에서 취급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배터리가 적재된 트레이를 맨손으로 만지고 방독면을 쓰지 않는 사진을 보고 폭탄과 다름없는 배터리를 취급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과연 안전교육과 소방 훈련 등의 교육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리셀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 과연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입니다. 회사의 유해인자나 잠재 위험을 지적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유관 단체들의 참여 없이는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다수 기업의 경영 제일 원칙은 이윤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과 비슷한 업종에 20년간 근무해 온 노동자로서 내린 결론입니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천하는 민관합동 안전보건활동과 배터리사업 분야의 자격심사 강화,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하도급 금지 등 법제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01**

**전지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현 재 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



# 전지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현 재 순



##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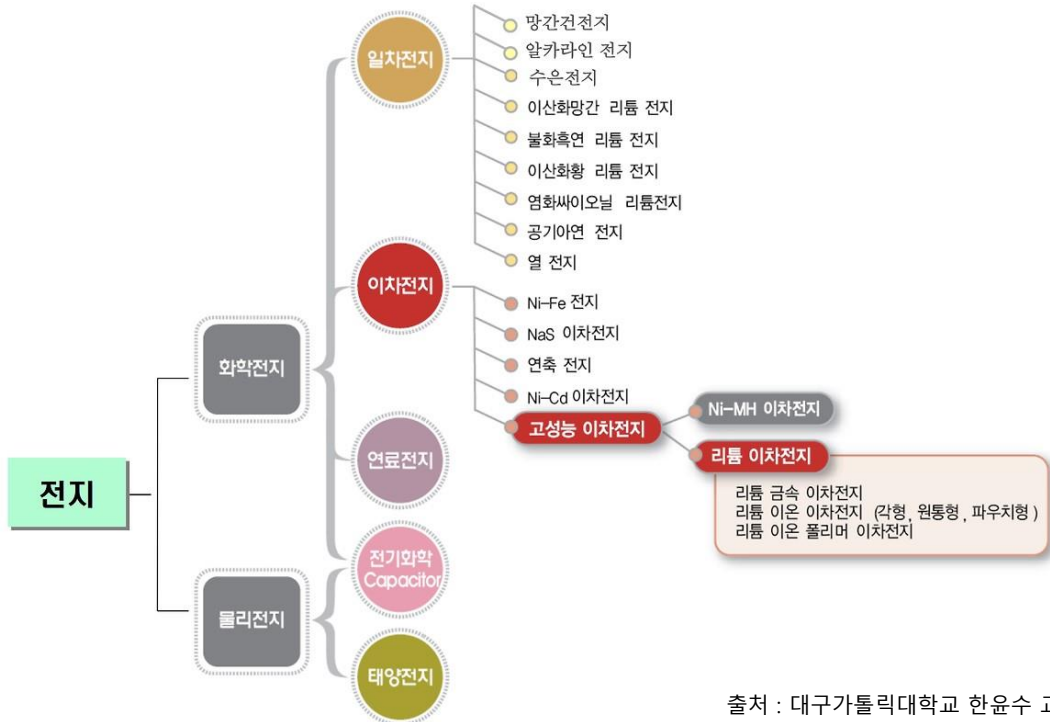
구분	사람(조직)요인	물질·기계 요인	물리환경 요인	사회경제환경 요인
사고 이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위험성평가, 보건관리자 미선임 하에서 다수의 파견근로자 사용</li> <li>파견근로자(불법파견)이므로 작업현장에 어두움</li> <li>물질 유해위험정보, 비상대응요령 교육·훈련 미시행</li> <li>이주민근로자 한국어와 기업조직문화에 어두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튬-염화티오닐 1차 전지 기술의 개발 (1970년대 군사용)</li> <li>리튬-염화티오닐의 유해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 지연 (일반소비자용도 지양 중심, 리튬-염화티오닐은 산안법의 위험물질)</li> <li>특히 완제품 안정화 단계에서의 운송·보관 과정의 압착 등으로 인한 벤트·발화 위험 상존 (빈번한 군창고 화재 등)</li> <li>포장·검수공정에서 완제품을 높게 쌓음 (1.5m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터리 완제품 보관용 별도공간을 없앴</li> <li>출입구의 별도 비상구 확보 하지 않음 (산안법령)</li> <li>좁은 공간에 완제품 다량 보관</li> <li>완제품 발화 관련 위험성평가·대책수립 미흡 (화학물질 관련 위험성평가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미터기(전력·수도 계량기, CCTV 등) 확대·보급에 따른 고밀도 전지의 필요성 증대(10년 이상 사용) [4차산업혁명·신재생에너지 수요]</li> <li>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으로 군사용 전지 수요의 급팽창과 해당 수요의 유동성 편차가 큼</li> <li>방위산업 당국·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공급망내 안전보건에 대한 단일함 (같은 원인에 의한 군내 보관창고 연속화재에도 대책 수립 미흡)</li> <li>산업부·배터리산업의 1차 전지 관련 표준 제정·보급 미흡</li> <li>노동보호당국의 산안법·파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행정집행의 실패 (위험성평가 인정 등)</li> </ul>
사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농도의 전지 열분해산물 SO2 (1.7 % 이상)에 급성 노출</li> <li>출입구의 발화·폭발로 반대 방향으로 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용기에 쌓아 놓은 1차 전지 완제품 중 하나의 전지에서 단락 등 미상의 원인으로 벤트·발화·파열·폭발</li> <li>열폭주 현상으로 고농도의 전지 열분해산물(SO2 등) 급격히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덥고 습한 장마철이고 전날 비와서 습도 높음</li> <li>D급 소화기(금속화재소화기)·공기호흡기 미비</li> <li>위험물질 제조·취급장소에 요구되는 별도 비상구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용 등 리튬 1차 전지수요는 짧은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파견 근로자수 많음</li> <li>환경부·소방청·노동부 안전당국의 협조체계 미흡 (소방청 점검 결과, 환경부 위해계획 등)</li> <li>방위산업 당국·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공급망내 안전보건에 대한 단일함 (군 특수용 등 방위산업에 대한 안전법령 특례 많음)</li> </ul>

#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2)

구분	사람(조직)요인	물질·기계 요인	물리환경 요인	사회경제환경 요인
사고 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23명 사망(이주민 근로자 18명 포함)</li> <li>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 경보 발령 여부 확인</li> <li>폭발·화재 형태의 재해이고 파견근로자 신원 확인 어려움</li> <li>중대재해처벌법에 수사 대상 중대산업재해 (경찰·환경부 관련 법에 따른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폭주 현상으로 고농도의 전지 열분해산물(SO2 등) 급격히 발생·비산·희석</li> <li>사고발생 직후 소방당국이 사업장의 물질에 관한 정보의 입수 과정 모니터링 필요</li> <li>소방당국, 지자체 리튬 1·2차 전지 사업체 일제 점검(자원 낭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당국 열분해산물 모니터링 (불검출 또는 급성중독기준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튬이온전지(2차전지) 관련 정보가 주로 보도되었고 배터리산업 전체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li> <li>이주민 근로자의 안전보건 현실에 관한 새로운 수사, '위험의 이주화'가 만들어짐</li> <li>공급망인 배터리산업협회, 방위산업당국과 관련 협회 등은 전혀 입장이 없음</li> <li>사업장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부재에 대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 필요(환경부·소방청·산업부 포함) :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제도의 발전</li> </ul>

-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전지산업 종류



출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윤수 교수

# 1차, 2차 전지 비교

구분	1차 전지	2차 전지
방식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전지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
구조	구조 단순, 에너지 밀도 높음	구조 복잡, 에너지 밀도 상대적으로 낮음
종류	망간/알칼리/리튬 전지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이온전지
비용	초기 비용 낮음, 장기적으로 고비용	초기 비용 높음, 총방전으로 경제적
전압	안정적, 저전력 소모기기	충전에 따라 변동, 고전력 소모기기
사용	리모콘, 시계, 장난감 등 전력소모가 적은 기기에 사용	휴대폰, 노트북,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전력소모가 큰 기기에 사용
환경	폐기물 문제, 재활용 어려움	재사용 가능, 재활용 가능

#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

연번	업체명	주소
1	주식회사 디온에너지	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55
2	디스커버리믹스테크매뉴팩처링(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249
3	(주)비츠로셀	충남 당진시 인더스파크로70
4	(주)비츠로밀텍	충남 천안시 풍세산단로58
5	주식회사 알이배터리	광주 북구 양일로147
6	(주)SM백셀 배터리사업부문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168
7	제노에너지(주)	경기 화성시 무하로70
8	셀콤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6
9	아리셀	경기 화성시 전곡산단12길33
10	코로스전지	충남 천안시 성거산단2로9

# 리튬 2차 전지 제조업체

●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대표3사 포함 16개 제조업체

연번	업체명	주소
1	(유)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경기 성남시 분당내곡로 131
2	LG에너지솔루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	SK온	서울 종로구 종로51
4	금양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
5	나라다에너지(유)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6	덕산퓨처셀	충북 청주시 공단로 134

연번	업체명	주소
7	럼플리어	대구 북구 호암로 51
8	리베스트	대전 유성구 문지로193
9	브이스페이스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75
10	삼성SDI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11	스탠다드에너지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테크노6로 36
12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269
13	유앤에스에너지	충남 천안시 2공단5로 97-34
14	제이알에너지솔루션	충북 음성군 교동2길 3
15	코칩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로 359
16	탑머티리얼	경기 이천시 덕평로 554-30

# 리튬전지 위험성(1)

1. 아리셀 최근 3년간 4차례 폭발사고  
 -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4년 1건

2.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군에서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  
 - 전체 92건 : 사용 중 사고 58건, 보관 중 사고 28건, 기타 5건  
 - 완제품 포장이나 ESS 에이징(전해액 분산까지 보관하는 공정) 위험성  
 - 완제품 대량 보관하는 사업장 화재폭발 위험성

전체	사용 중 사고	보관 중 사고	기타
92건	58건	28건	5건

2014년~2023년 간 리튬1차 전지 파열사고현황  
 \_국방부자료(이용우 의원)

# 리튬전지 위험성(2)

- 완제품 보관 과정에서 사고 발생. 분리막 결함으로 양음극이 접촉, 온도 급상승 화재 발생 열폭주 현상.
- 가급적 소량 및 분리 보관, 열감시 센서 자동 소화약제 분사, 화재 발생시엔 스프링클러 물 다량 분사, 또는 수조로 불이 붙은 배터리를 통째로 냉각되도록 설비 설치할 만큼 화재,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음.
- 리튬 이외에 양극재로 사용되거나 사고 시 발생가능한 염화티오닐, 불소,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은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사고대비물질97종/주민대피물질16종(환경부 지정관리)이 대부분임.
- 고염도 폐수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 중금속 폐수 발생. 또한, 재활용업체 폐배터리 파쇄하여 리튬,니켈,망간 추출 과정에서 폭발가능성 높음. 하지만 폐배터리 관리방안 없음.

“리튬 배터리는 제조 단계에서 큰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배터리가 충전된 이후, 특히 완제품을 포장하거나 에이징(배터리 전해액이 충분히 분산될 때까지 보관하는 공정)하는 단계에서 큰불이 나죠.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을 못 거른 경우인데요. 코스트코처럼 커다란 창고에 대용량으로 배터리를 적재해놨는데 그중 불량품 하나가 불나면 끝이죠. 다른 배터리로 순식간에 옮겨붙으니까요.” <정기백 금속노조 삼성에스디아이(SDI)지회 사무장>

“주로 배터리를 완충, 포장한 뒤 보관하는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불량품이 검수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보관 장소로 이동했다가 뒤늦게 불이 나는 경우다. 부품이 눌렀거나 분리막에 구멍이 나는 등 결함이 있으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불꽃이 튜다.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면 불은 순식간에 커진다. 사고 영상을 보면, 아리셀도 리튬 배터리를 한데 쌓아두고 박스에 포장하는 방식이었다. 사고 당시 아리셀 공장 내부에 있던 배터리는 3만5천여 개에 이른다.”  
 - 한겨레 6.29 신다운 기자-

# 2차 전지산업 전망

<2차전지 시장 규모 전망치>



- 2021년 461억 달,  
2030년 3,671억 달러로  
8배 성장예상

-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고성장  
전망

※ 자료: SNE리서치,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1)

- 산업안전보건법 -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도감독 강화

- 리튬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2호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1) 제 1편 총칙 2장 작업장 관리

#####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

#####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2)

## - 산업안전보건법 -

### 2) 제2편 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에 접촉, 가열/마찰 등 금지**해야 함.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는 건축물**에 내에 보관, 취급해야 함.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사업주는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사업주는 폭발, 화재 예방을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함.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기의 사용 금지**해야 함.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사업주는 인화성 고체 취급 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함.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3)

## - 산업안전보건법-

### 2. 산업안전보건법 PSM 대상사업장 지정 확대

1)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 시행령 제43조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7개 업종 또는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 사업장  
- 원유정제/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복합비료/농약/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리튬전지 제조업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종 물질과 규정량)

2) 공정안전보건서 주요 항목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 안전운전계획은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및 보수 계획 등 포함.

3)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진행

4) 등급별 관리 기준  
- P, S, M+, M- 등급에 따라 점검 및 기술지도가 차등적으로 적용.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4)

## - 산업안전보건법-

### 3. 도급 금지 대상 작업 지정 확대

#### 1)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작업 추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도급하여 하청노동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든 아니된다.
- 도급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리튬전지 제조작업 추가)

#### 2) 제118조 허가대상물질 추가

- 시행령 제88조 허가대상유해물질 디클로로벤지딘,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등 12가지 (리튬 및 리튬화합물 추가)

### 4. 위험성평가(화학물질) 제도 개선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정부 정책 및 사업장 진행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위험성평가가 서류상 형식적, 그나마 안전분야 위주, 보건 특히 화학물질은 매우 미흡.

### 환경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구성 (활성화공정 포함)

**방재실 HMI**

**평가시**

**Alarm 발생시**

Step 1 화재 발생 시 메인화면표시

Step 2 화재 발생 위치 표시

Step 3 CCTV로 화재 확인

Step 4 대응프로세스 확인/출동

Step 5 SMS 자동발송

> 기능 설명

- 원격 모니터링,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화재발생 여부, 환경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상태, 가스농도, 위험물질 누출 감지 등을 센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 운영체계 개선으로 위험 인식 및 대응행동 향상
  - 평상시/Alarm발생 시 자동전환 기능으로 현장 상황 신속 파악 및 대처
- 환경안전 현황 대시보드
  - (난)화경으로 방재실 외 모니터링 가능
  - 공장 별 전체 알람발생 현황 모니터링
  - 알람조치현황 모니터링
  - 일별 알람발생 (Trend분석) 모니터링
- 알람발생 전체 현황 및 조치
  - 알람발생 전체현황 확인 및 조치입력
  - 알람팝업 동일정보(태그, 상세내용 등) 확인
- 알람발생 현장 CCTV
  - 이상상태 자동감지시 현장 CCTV 연동 모니터링 (태그 레전드 - CCTV url 정보 사전연계)
- 해당 알람 SOP (행동요령)
  - 알람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 절차 및 조치가이드 (설비 주요특징, Risk 포인트, 현장대응 점검)
- SMS 자동발송
  - 이상상태 정보 및 비상대응 안내문자 자동발송

Confidential

## 활성화 공정 소방시설 및 비상대응 현황

### 법적사항

#### ■ 소방시설 현황

- 감지설비: 공기흡입형, 주소형, 광전식 분리형
-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 피난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공기흡입형 감지기]

[연기 감지기]

[옥내소화전]



[대형 소화기]



[스프링클러]



[피난유도등]

#### ■ 활성화공정 비상대응 훈련

- 부서별 자체 비상대응훈련 실시 (2회/년)
- 건물단위 비상대피훈련 실시 (1회/년) \* 24년 상반기 소방서와 합동훈련 실시 완료 (소형1동 활성화공정대상)



방재센터 초기 진화

소방차 화재 진화

민명 규모

### 추가사항

#### ■ 소방시설 현황

- 수포 (Water Canon): 다량의 물로 소화(대포 형식)하는 설비  
- 적외선 감지기, 영상 화재 감지기 작동 → 수신기 '화재' 알람  
→ 수포 회전 및 위치 측정 → 소화수 방사 (전동 밸브 개방)
- In-Rack 스프링클러: 물품 적재를 위한 Rack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 헤드 개방 후 소화수 방사 (총방전 93℃, 에이징 68℃ / 141℃)
- 호스릴 소화전: 호스 부분이 릴 형태로 된 소화전
- 비상배연장치: 화재 시 발생된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



[수포]

[인랙 스프링클러]

[호스릴 소화전]

#### ■ 환경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활성화공정 포함)



#### •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화재발생 여부, 환경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상태 등을 센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총방전공정)

## 수포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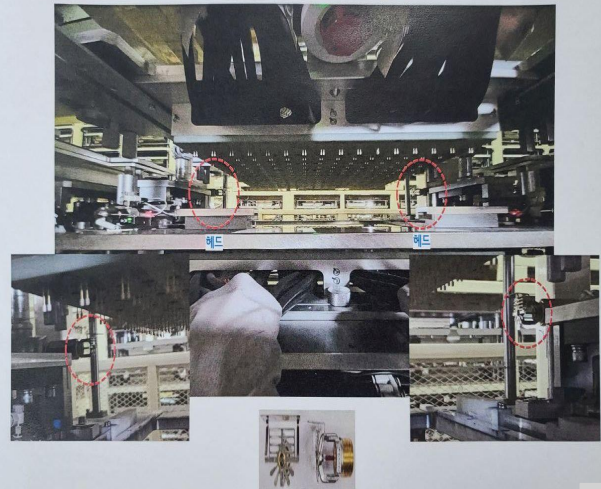
#### ■ 수포설비



출하 에이징 스테이지

## In-RACK 스프링클러

#### ■ In-RACK 스프링클러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5)

## - 화학물질관리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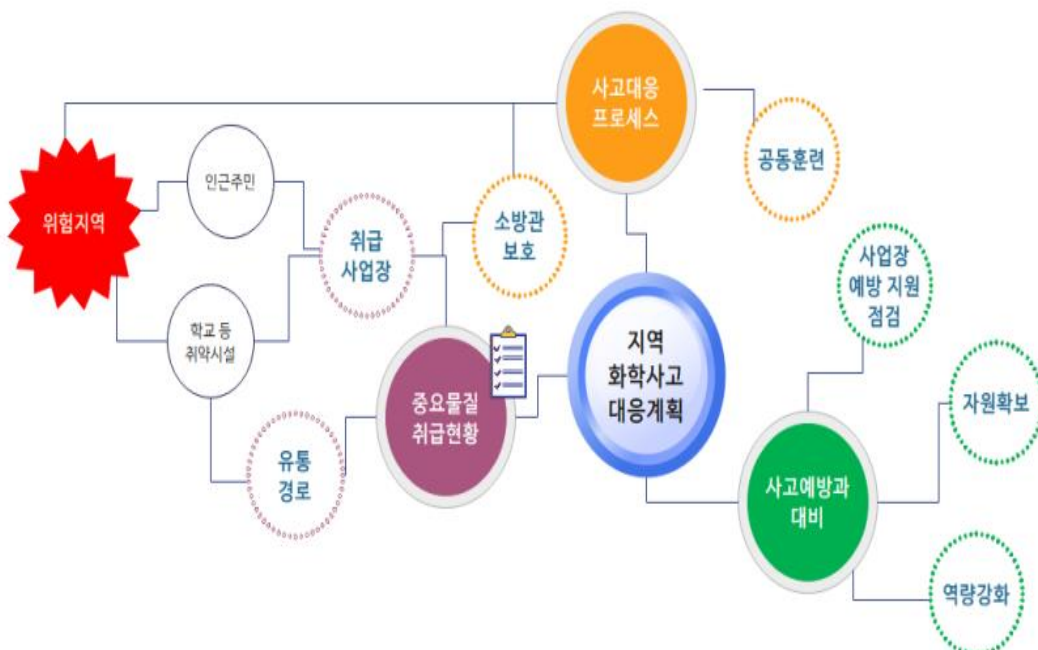
### 1. 리튬 사고대비물질 지정 관리 필요

- 사고대비물질 97종 :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 법 23조 : **사업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이행, 지역사회고지 **의무**
- 법 23조의 4 : **지자체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주민대피, 복구지원 **의무**
-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물질별 함량과 규정수량확인/유형별 인체보호 방법 포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공정안전정보, 안전장치 현황	주민대피 장소 지정, 표지판 설치 등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주변 영향평가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계획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사후조치	긴급구호물자, 응급의료지원 등
지역보호대피 및 지역사회고지 계획	비상연락체계, 유관기관 협의체계

##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24조의 4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의무(2020.3)



#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추진과정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선관리지역 60군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분포

7227t (원형)

\*2019년 기준(연간), 취급량=제조량+사용량



우선 순위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업연도	우선 순위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업연도
1	울산광역시			3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2017(서구), 2020	32	경기도	연성시	
3	전라남도	여수시	2016	33	경기도	수원시	2016
4	경기도	안산시		34	경상북도	김천시	2022(컨설팅)
5	경기도	평택시	2017	35	경기도	포천시	
6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6	경상북도	칠곡군	2022(컨설팅)
7	경기도	시흥시		37	경기도	김포시	
8	충청남도	서산시	2020	38	충청북도	충주시	2021
9	충청남도	청주시	2018	39	경상북도	경산시	
10	충청남도	아산시		40	경상북도	경주시	2022
11	부산광역시		2021	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
12	경상남도	창원시	2020	42	경기도	이천시	
13	경상북도	구미시	2019	43	경상북도	고령군	
14	대구광역시			44	충청북도	진천군	
15	전라북도	군산시	2019	45	경기도	용인시	2019
16	충청남도	당진시	2021	46	경상북도	영천시	
17	전라남도	광양시		47	경상북도	봉화군	2022(컨설팅)
18	대전광역시		2021	48	경기도	부천시	
19	경기도	화성시	2018	49	경기도	양주시	
20	충청남도	천안시		50	충청북도	음성군	2023
21	광주광역시		2017(광산구)	51	전라남도	순천시	
22	전라북도	익산시	2022(컨설팅)	52	경기도	안양시	
23	충청남도	공주시	2022	53	경상북도	영주시	2018
24	전라북도	전주시		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5	경기도	파주시	2018	55	전라북도	정읍시	
26	경상남도	양산시	2017	56	충청북도	보은군	
27	세종특별자치시			57	경상남도	함안군	2023
28	전라북도	원주군		58	충청남도	청양군	
29	전라남도	나주시		5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0	경상남도	김해시	2019	60	충청남도	태안군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6)

### - 화학물질관리법 -

#### 2. 화학사고 정의의 광범위한 해석 필요

- 현행 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님.
- 법 2조 화학사고 정의: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 (소화기 이산화탄소, 정화조/폐수처리장 황화수소 질식사고 등 제외되고 있음)

#### 3. 지자체별 화학안전협의체 구성 필요

- 법 제7조의 2 '화학물질관리 조례제정', 제11조의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상 화학물질관리위원회와 배출저감이행점검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구성과 실행율이 낮은 상황임. '해야한다' 등 법제화 필요.
- 군산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사례와 같이 지역의 이해당사자 그룹이 참여하는 "화학안전협의체(가칭)" 구성하여 화학사고 대응에 나서야 함.

# 시민단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24.07.11 14:01 김창호 선임기자

☆ ↻ ↵ T ☰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 새만금청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2024.07.11 새만금개발청

🔊 + - 🖨 ☰

새만금개발청은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청, 군산시, 군산시의회, 전북소방본부,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군산대학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아이쿱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도레이첨단소재(주), OCI(주)군산공장, 백광산업(주), (주)성일하이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참여기관

# 전지산업 종합안전관리 대책(7)

## -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안법 -

### 1. 배터리 제품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점검 필요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배터리 기준 및 관리체계 확인하고 노동자, 주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관리 필요.

- 주무부처로서 '배터리 산업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성한 만큼 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함.

정부는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해 살펴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배터리산업 현장 안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리튬 1차전지 제조 시설뿐 아니라 리튬 2차전지 제조 시설, 리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시설, 사용 후 배터리 보관 시설도 점검하기로 했다. 박동환 이윤진 홍혜진 기자

### 2.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부서였던 산업통상자원부가 화학물질 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안전 및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감사합니다

현 재 순 [hjsoon9@hanmail.net](mailto:hjsoon9@hanmail.net)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건강지킴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발표 02**

**중소제조업 일자리 특성과  
예방체계 구축 방안 :  
파견/도급과 일용직 고용을 중심으로**

**박 종 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240722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 중소사업장 일자리 특성과 예방체계 구축방안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1. 한국의 산업재해 특성과 대중소기업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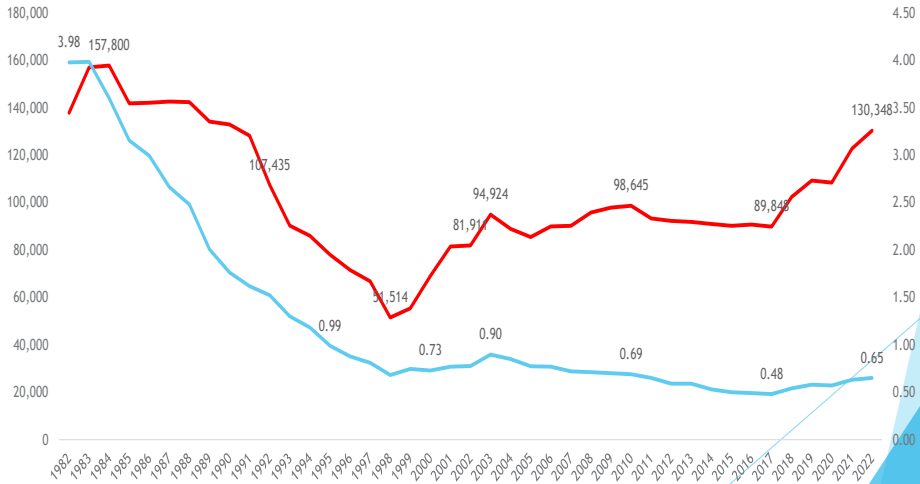
#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 ▶ 한국의 산업재해자수(공식, 적색)

- 산업재해 피해자수는 1983년 157,800명으로 정점. 1998년 51,514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2000년대 이후 20여년 동안 재해자수는 9만명 대로 유지하다가 2018년 이후 10만명 이상으로 증가 : 긍정적 현상!! 산재보험 적용자 확대

## ▶ 한국의 산업재해율(공식,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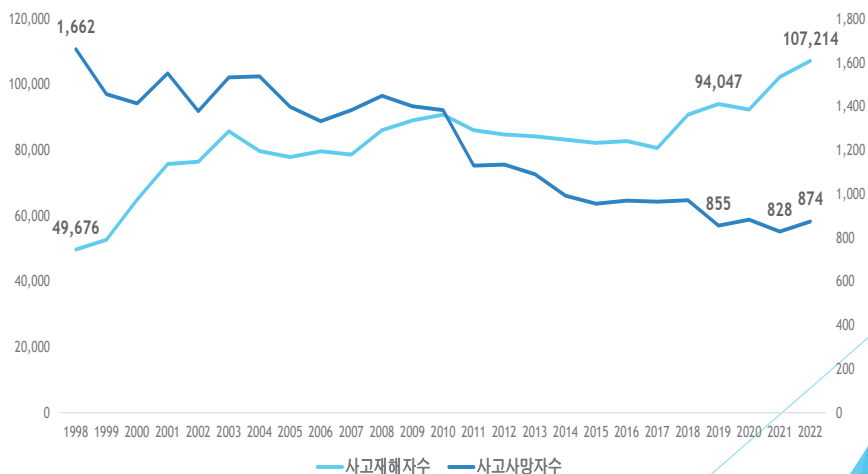
- 재해율은 1982년 3.9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1995년 처음으로 1이하로 진입.
- 2000년대는 (2003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0.7대 유지. 2010년대는 0.5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증가세.



# 한국의 사고 재해자수 및 사망 재해자수

## ▶ 사고 재해자수 및 사고 사망자수 추이(cf. 질병 산재의 누적적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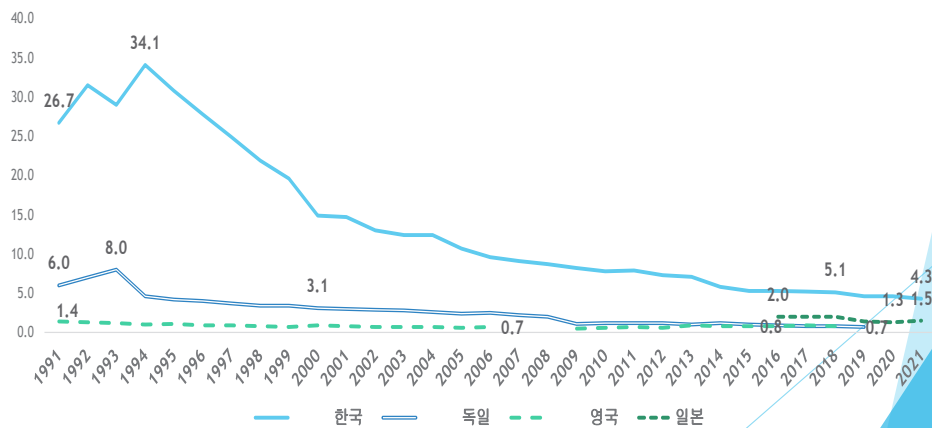
- 지난 20년 동안 사고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산재보험 커버리지 확대)
- 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산재예방노력의 효과)
- 지금까지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사고 재해자 증가 ~ 사망자 감소 추세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함



## 치명적 재해(fatal injuries) 국가간 비교

### ▶ ILO 기준의 노동자 10만명당 치명적 재해자수(사고발생 1년 이내 사망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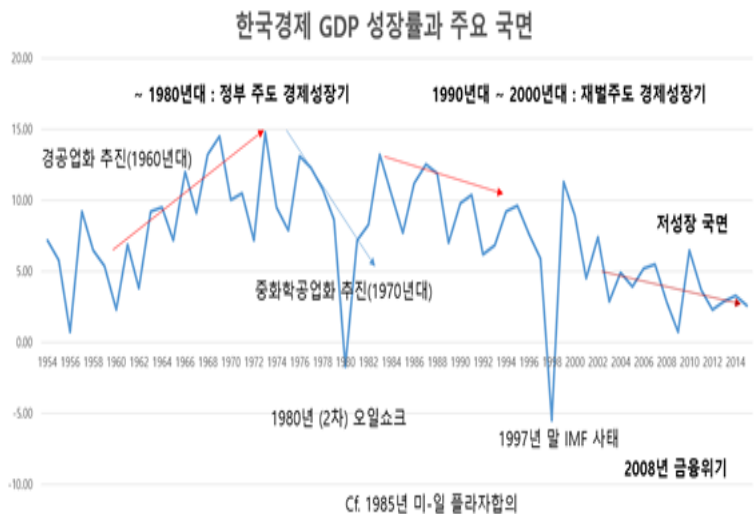
- 한국의 치명적 재해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1990년대 초반 독일 수준
- 참고로 미국의 치명적 재해자수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은 1.5명 대.
- 향후 10만명당 치명적 재해자수를 1명대로 낮추기 위한 산업안전 수준향상의 과제가 있음



##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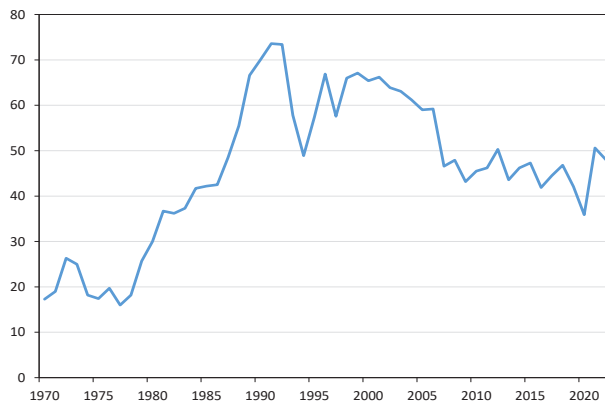
### ▶ 국가주도 산업화에서 기업주도 산업화로

- 특히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말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 기업의 발언력과 영향력 강화
- 대기업주도로 원하청 관계의 확산
- 1980년대 말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확산과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 하청계열화를 통한 동원 전략

- ▶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보다는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통한 자원동원 성장 전략
- ▶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위수탁기업(소위 하청업체)의 비중이 50%를 넘어 1990년대 중반 한 때 70%를 상회
- ❖ **이제는 ‘(하)도급’ 자체가 이제는 산재발생의 원인들 중의 하나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한국 중소기업의 수위탁기업(하청업체) 비중과 추세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부)

## 원청 대기업 중심의 한국사회와 격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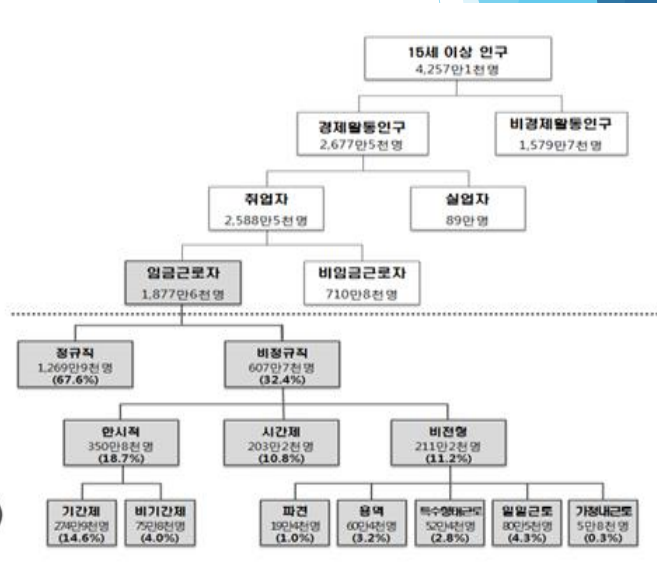
- ❖ 원청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한국사회
    - 2000년대 이후 한국 주요 제조대기업들은 수출로 고도성장 : 글로벌 대기업 등장
    -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하청계열화' 방식의 동원 전략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화된 하청 시스템의 하위 파트너 -> 놀랍게 빠른 성장이라는 성과 뿐만 아니라 한계와 문제점도 야기
  - ❖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
    -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기업규모간 격차 확대 : 기업 간 격차 뿐 아니라 소속 기업의 규모에 따른 노동자 간 격차 -> 사회적인 불평등 심화 + 장기적인 성장동력 훼손
    - 노동시장의 복잡성 : 중층적이고 파편화된 노동계약 관계가 확산. Who the Boss?
    - 위험의 외부전가를 통한 노동차별의 심화 : 불안정 고용에게 전가되는 리스크
- ⇒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내하면서 보이지 않는(invisible)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스스로 보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론장에서 논의할 필요**

## 다양한 고용관계의 등장1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다양한 비정규 유형
- ▶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은 크게
  - 1) 한시적 : 기간제(fixed-term)
  - 2) 시간제 : 단시간(part-time)
  - 3) 비전형고용(alternative employment) :
    - ① 파견 ② 용역 ③ 특수형태 고용
    - ④가내근로 ⑤ 일일 근로(on-call)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 다양한 고용관계의 등장2

- ▶ ILO(2016)의 비표준고용의 유형화 : 오늘날 3과 4 유형이 특히 문제

비표준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1)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특징 : 기간의 제한이 있음(not open-ended)
2) 파트타임과 호출노동(part-time and on-call work) 특징 : 플타임이 아님(not full-time)
3) 중층적 고용관계(multi-party employment relationship) 특징 : 직접적이지 않지만, 최종 이용자(end user)에게 종속적인(subordinate) 관계
4) 위장된 고용/종속적 자영업자(disguised employment/dependent self-employment) 특징 : 부분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님(not part of employment relationship)

## 불안정 고용(precarious work)의 확산?

- ▶ 오늘날 고용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 과거의 풀타임 종신고용 관행이 점차 약화되면서 비표준적이고 (nonstandard) 불안정한(precarious) 고용 확산
  - 비정규고용 그 자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작업장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하에서 비정규 고용 노동자들은 제도의 틀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제도의 적용
  - 전통적인 계약직 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 고용(비전형 고용, 중층/특수고용)이 등장하고 확산
  - 하지만 통계조사에서 임금노동자 중 중층/특수고용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 아울러 원하청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 : 고용형태 공시제에서 사내하청 인원수 정도 추정.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	일임근로
2003. 8	99(0.7)	346(2.4)	601(4.2)	167(1.2)	591(4.2)
2004. 8	119(0.8)	407(2.8)	709(4.9)	172(1.2)	669(4.6)
2005. 8	119(0.8)	425(2.8)	633(4.2)	139(0.9)	713(4.8)
2006. 8	131(0.8)	488(3.2)	615(4.0)	175(1.1)	662(4.3)
2007. 8	176(1.1)	587(3.7)	637(4.0)	124(0.8)	844(5.3)
2008. 8	140(0.9)	639(3.9)	603(3.7)	65(0.4)	822(5.1)
2009. 8	166(1.0)	617(3.7)	644(3.9)	99(0.6)	885(5.3)
2010. 8	208(1.2)	609(3.5)	598(3.5)	71(0.4)	874(5.1)
2011. 8	198(1.1)	672(3.8)	625(3.5)	76(0.4)	974(5.5)
2012. 8	216(1.2)	682(3.8)	554(3.1)	69(0.4)	879(4.9)
2013. 8	205(1.1)	649(3.5)	553(3.0)	74(0.4)	829(4.5)
2014. 8	195(1.0)	608(3.2)	533(2.8)	58(0.3)	816(4.3)
2015. 8	211(1.1)	660(3.4)	502(2.6)	55(0.3)	886(4.5)
2016. 8	201(1.0)	702(3.6)	502(2.5)	42(0.2)	874(4.4)
2017. 8	188(0.9)	694(3.5)	497(2.5)	30(0.1)	801(4.0)
2018. 8	189(0.9)	596(3.0)	506(2.5)	53(0.3)	801(4.0)
2019. 8	182(0.9)	615(3.0)	528(2.6)	46(0.2)	748(3.6)
2020. 8	164(0.8)	552(2.7)	498(2.4)	49(0.2)	896(4.4)
2021. 8	211(1.0)	585(2.8)	560(2.7)	79(0.4)	955(4.5)
2022. 8	189(0.9)	567(2.6)	561(2.6)	95(0.4)	814(3.7)
2023. 8	221(1.0)	534(2.4)	553(2.5)	72(0.3)	665(3.0)

한국노동연구원 <2023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재해위험에 다양한 접근

-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작업장 위험요인과 건강 저해요인에 대한 대처 : 산업공학(안전, 주로 사고) 및 보건 의료(보건, 주로 질병)의 대응
  - 재해율(사고 및 직업병)의 하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물론 앞으로도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율, 특히 사망사고는 더욱 줄여야 함.
- ▶ **새롭게 등장하는 일과 고용을 둘러싼 재해위험**
  - 전통적인 재해위험의 하락 ∞ 새로운 재해위험의 등장
  - 기존 산업공학/보건의료 차원에서의 재해율 감소 노력만으로는 한계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재해위험 요인 대응에서 정해진 답은 없는 상황
  - 하나의 해결방안이 옳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산재발생원인의 복잡성)

## 일반적인 위험관리전략과 공백지대의 발생

### ▶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전략

- 1) 위험 회피(avoidance) : 해당 위험에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피하는 전략
- 2) 위험 전가(transfer) : 위험을 '보험제도' 이용한 이전과 '제3자' 이전. 보험 제도가 아닌 방식의 이전에서 위험은 누가 책임?
- 3) 위험의 (능동적) 보유(maintenance) : 위험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 등의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

###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제도에서 같은 사업장 내 원하청에 대한 규율은 최근 조금씩 등장

- ❖ **법제도의 미비로 재해위험의 전가가 현실화될 가능성**
- ❖ **특히 중층적인 하도급 관계 하에서 재해위험의 전가가 복잡하게 작동할 가능성**

##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외재적) 접근 필요

- ▶ 1964년 <산재보험제도> 시행과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산업재해의 '보상'과 '예방'의 형식적 틀 완성. (다만) '단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
- ▶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중층적인 고용의 확산
  - : **재해를 감소 but 안전보건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ex. 사망재해의 하청화)**
- ▶ 산업재해 문제는 지금까지 산업공학(안전), 의학/간호학(보건)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지속. 상당한 성과를 도출!
- ▶ 기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재해위험 연구는 단선적 접근이 다수.
- ▶ How **new work arrangements** affect the health of the flexible workforce?(Benach & Muntaner, 2007)
  - ⇒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 필요성(cf. 물리적, 사회심리적 원인)**
  - ⇒ **즉, 파견도급 특수고용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

## 2. 중소기업장 근무환경 특성

### 중소사업장 분포와 노동자 규모

-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
- 2019년 현재 전국의 사업체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체 비중으로는 98.9%,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6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기업이 한국 산업의 저변을 담당.

	종사자규모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업체 비율	종사자 비율
소기업	5인 미만	3,207,000	5,812,863	80.2	28.5	98.9	67.8
	5~9인	483,784	3,057,062	12.1	15.0		
	10~49인	262,691	4,935,567	6.6	24.2		
중기업	50~99인	27,132	1,856,034	0.7	9.1	1.0	19.0
	100~299인	12,738	2,009,933	0.3	9.9		
대기업 : 300인 이상		3,469	2,694,519	0.1	13.2	0.1	13.2
합계		3,996,814	20,365,978	100	100		

##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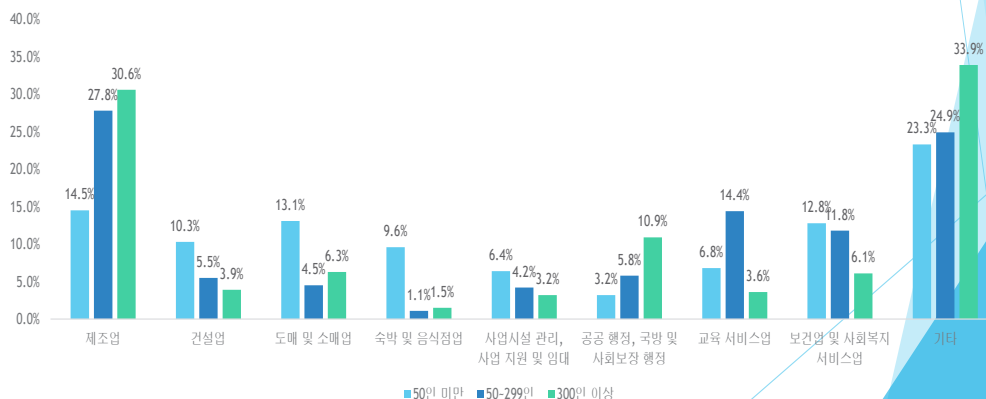
- ▶ 안전보건공단 2020년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중소기업(50인 미만) 노동자 특성을 확인한 결과
  -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중대규모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용직 비중은 낮고 임시 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 비중이 낮고, 판매서비스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Cf) 다양한 고용형태나 원하청 간 고용 특성 및 근무환경 차이를 비교할 자료의 부재

	성별 분포		중소상 지위 분포			전체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	기능·단순직	전체
	남성	여성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49인	11614 51.1%	11097 48.9%	16663 73.4%	4200 18.5%	1847 8.1%	22711 100.0%	1~49인	9111 40.1%	4896 21.6%	8704 38.3%	22711 100.0%
50~299인	4143 62.2%	2516 37.8%	5915 88.8%	624 9.4%	120 1.8%	6659 100.0%	50~299인	3802 57.1%	642 9.6%	2215 33.3%	6659 100.0%
300인 이상	4403 72.2%	1692 27.8%	5666 93.0%	382 6.3%	47 0.8%	6095 100.0%	300인 이상	3868 63.5%	600 9.8%	1627 26.7%	6095 100.0%
합계	20160 56.8%	15305 43.2%	28244 79.6%	5206 14.7%	2014 5.7%	35465 100.0%	합계	16781 47.3%	6138 17.3%	12546 35.4%	354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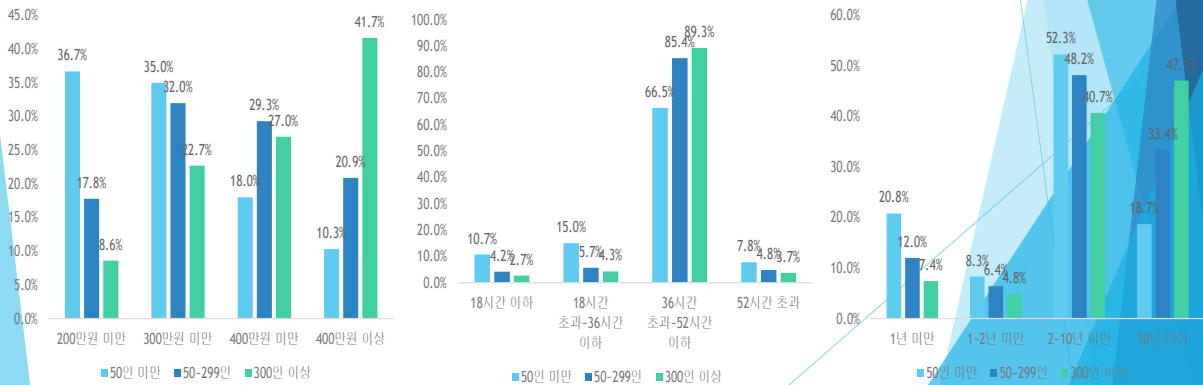
##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업종별 분포

- ▶ 안전보건공단 2020년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중소기업 노동자 특성을 확인한 결과
  - 업종별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비중이 높음.
  - 300인 이상은 제조업 및 공공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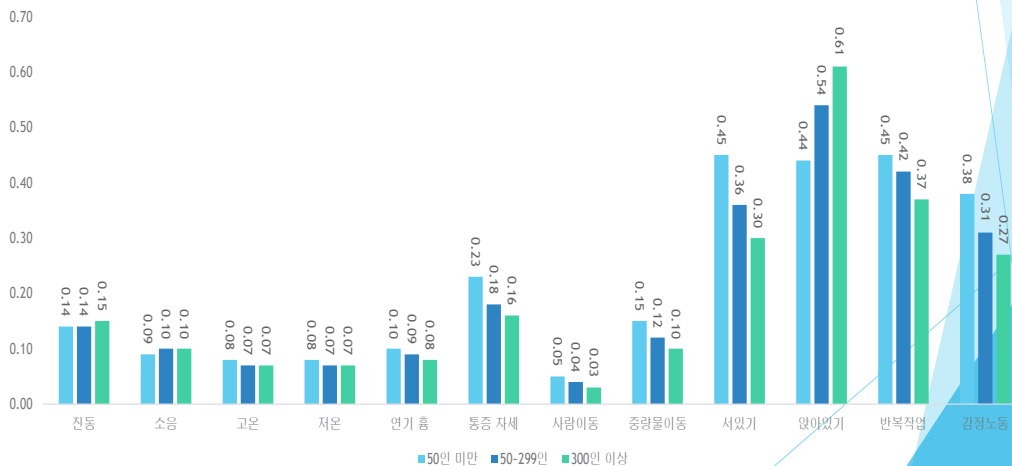
## 임금 및 주당노동시간, 근무기간 특성

- ▶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미만도 35.0%.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00만원 이상이 41.7%로 비중이 가장 컸고,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8.6%에 불과
- ▶ 주당노동시간은 36-52시간의 정상근무시간 범위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이는 단시간 근무 노동자의 비중이 15.7%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아울러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비중도 7.8%로 중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 근무기간도 작은 사업장은 1년 미만이 20.8%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18.7%에 불과해 대기업의 10년 이상 47.1%과 확연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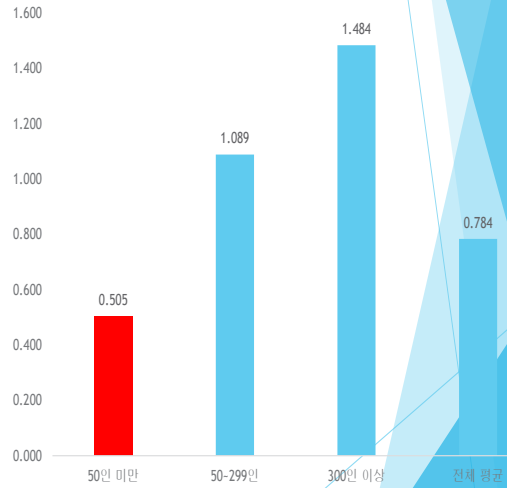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

- ▶ 진동, 소음, 고온, 저온, 연기흡 등은 기업규모간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
- ▶ **통증자세, 중량물이동, 서있기, 반복작업, 감정노동** 등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출이 긴 편. 반면 앉아있기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오래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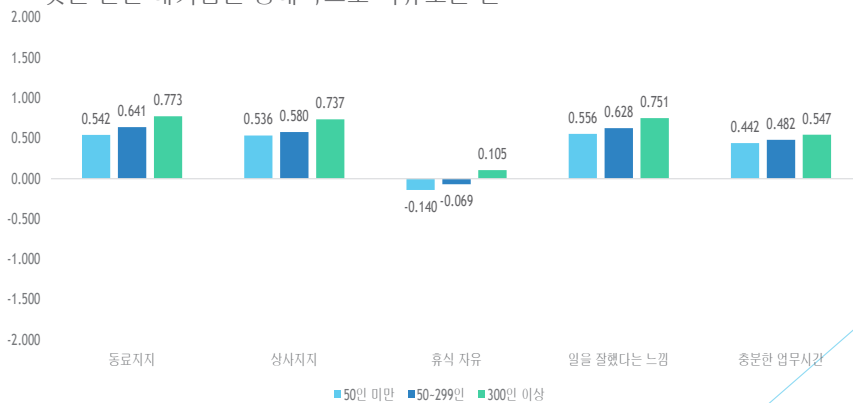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

-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하고 있는가를 확인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안전관련 정보를 잘 제공받는 편(부정적이면 -, 긍정적이면 +. -3~+3 범위)
- 정보 제공 여부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기는 하지만 유해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
- 이와 같은 정보접근의 차이는 작업장 내 위험에 대응하는 역량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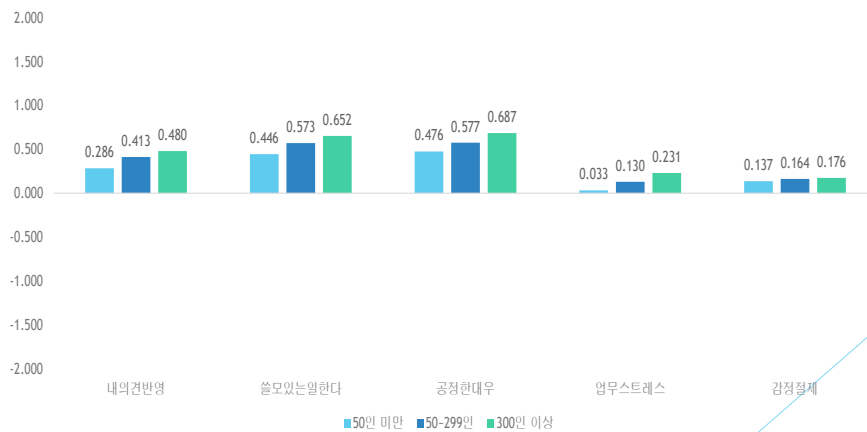
## 회사 내 근무환경1(5점 척도. -2 ~ +2)

- ▶ 동료 및 상사관계, 충분한 업무시간 제공,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휴식의 자유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으로 응답. 업무 중 휴식의 자율성이 낮은 반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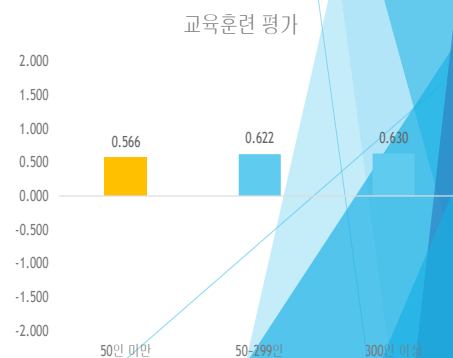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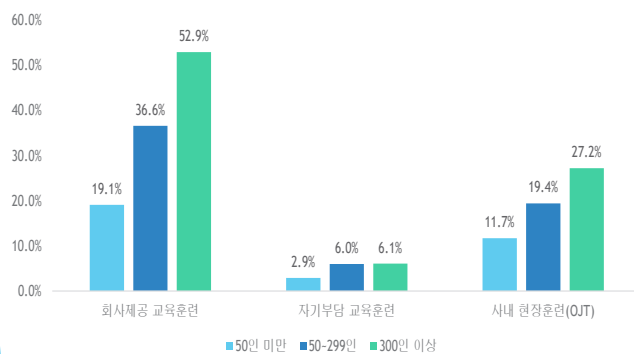
## 회사 내 근무환경2(5점 척도. -2 ~ +2)

- ▶ 업무스트레스는 50인 미만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편. 특히 공정한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



## 교육훈련 경험 및 만족도

- ▶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육훈련 경험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회사제공 교육훈련의 격차가 특히 크게 나타남
- ▶ 아울러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점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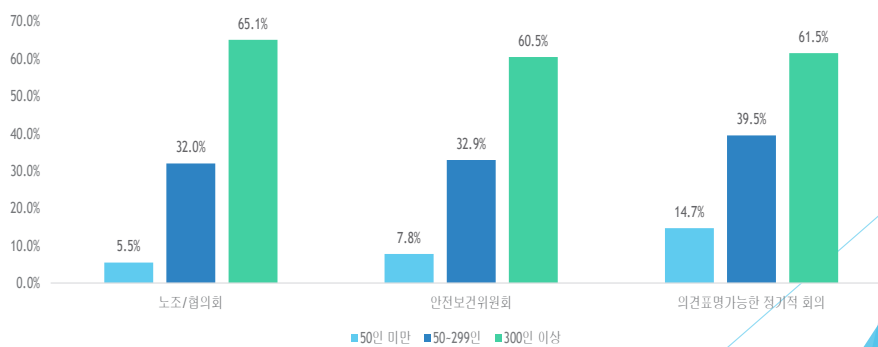


## 참여 및 소통 경로

### ▶ 회사 내에서 노동자들의 참여 및 소통경로를 질문한 결과

-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등이 존재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장은 5.5%인 반면 대기업은 65.1%가 존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0인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7.8%에 불과.
- 의견표명이 가능한 정기적인 회의도 중소기업장은 14.7%에 불과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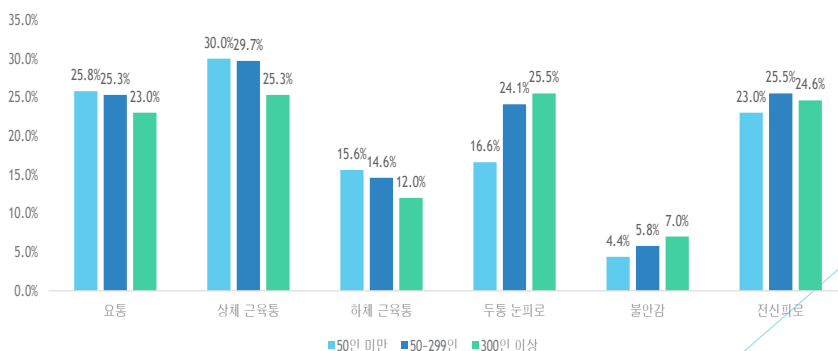
⇒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은 소통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가능성도 낮은 편



## 건강이상 호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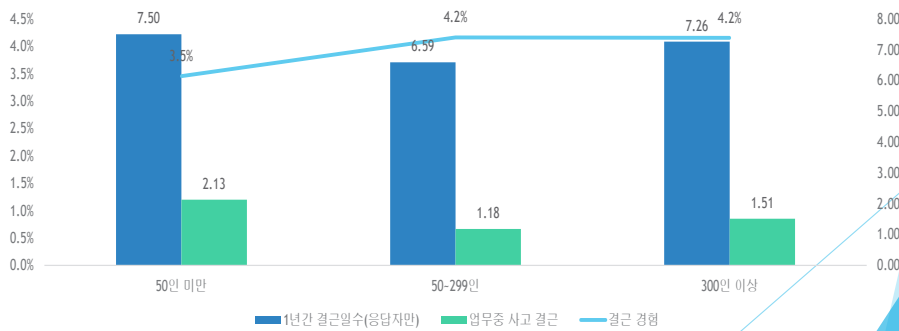
### ▶ 증상별 건강이상 호소율을 확인한 결과

- **요통, 상체근육통, 하체근육통**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증상이상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두통, 눈피로, 불안감**은 규모가 큰 사업장 노동자들의 증상이상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신피로 호소율은 1/4 정도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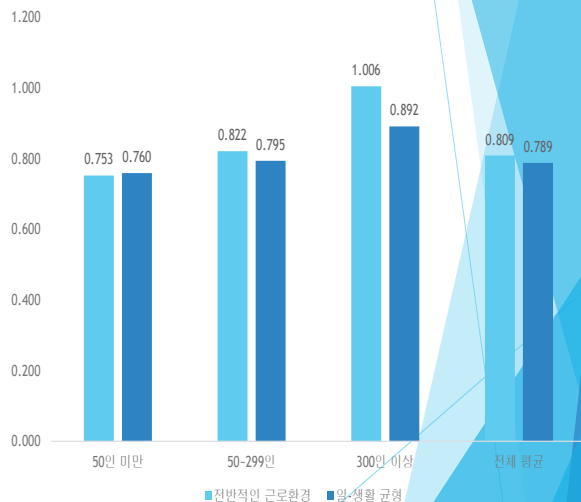
## 결근 경험 및 결근일수 비교

- ▶ 지난 1년간 결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0인 미만은 3.5%, 5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4.2%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결근경험은 낮은 편
  - 낮은 결근율은 결근을 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일 수 있음
- ▶ 하지만 결근경험자들의 결근일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7.5일로 가장 길었으며, 특히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결근은 2.13일로 긴 편.
  -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결근위험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일-생활 균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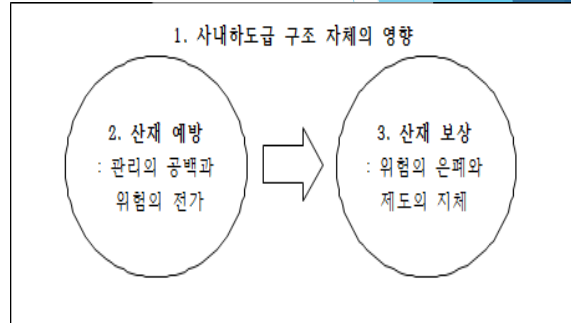
-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일 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근무환경 및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부정적이면 -, 긍정적이면 +, -3~+3 범위)
- 하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서 만족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규모의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일생활 균형 만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중소사업장 도급구조와 산업안전문제

▶ 하청/도급으로 위험이 전가될 개연성과 산업안전관련 문제점

1. 사내하청/도급 구조 자체가 원인으로 작동하는 사례들
2. 예방 차원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재해위험이 전이되고, 원하도급 관계로 인해 초래되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 사례들,
3. 보상 차원 : 제도를 통한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하도급 관계를 매개로 한 배제의 사례들



【표 2】 산재안전망의 다차원적 개념구조

속성	사전 예방			사후 보상		
하위 속성	1)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시스템의 수립	2) 감독 및 제재	3) 교육 및 훈련, 정보의 제공 (고지)	1) 요양지원 (치료 및 간병 등)	2) 소득보장	3) 재활 및 복귀 지원

Cf) 박고은(2020)의 ‘산재안전망’ : 사전예방적 산재안전망 + 사후보상적 산재안전망

## 1. (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원인?

### 1) 구매부(팀)(procurement)의 하도급업체 관리 : 생산과 계약의 분리

- ‘현장생산관리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작업현장에서 함께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관리·통제, ‘계약상으로는 도급계약을 통해서 이원화’하여 관리
- 1차 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을 통한 인력 활용 사례 : 원청에서 인원수 파악 x. 관리체계의 공백 발생.
- 불법파견 논란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증대

### 2) 하도급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과 열악한 처우

- “한곳에 오래 일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깐 새로운 작업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구요. 심지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만 와서 일하고 가다 보니까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고...” :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 일용직 활용 증가.
- 잦은 이직은 낮은 업무몰입으로 이어지면서 사고발생률 증가 우려

### 3) 원청의 기성금 산정과 협력업체의 인력 부족

- 협력업체 자율적인 투입인원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적정인원 미확보로 작업하면서 사고위험 증대

## 2. 산재 예방 측면 :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 1)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격차

- “작은 회사에서 힘들고 위험한 공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씩 (안전)교육할 시간도 안 되고... 공간도 안 되고... 할 사람도 안 되고... 서류상으로는 다 만들어 놓죠”: 안전보건 역량의 차이
- 5인 미만 소규모 하도급업체나 인력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을 수도 있음
- 최근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조금씩 증가. 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낮은 편. 대기업은 다수의 협력업체가 한번에 참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

### 2) 위험-기피 공정의 하도급화와 작업중지권 어려움

- 위험하고 열악한 공정의 하도급업체 담당. 안전보건책임은 하청업체가 담당(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 하도급업체의 작업중지권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 작업중지권을 모르거나 사용할 경우 책임(지체상금LD 발생) 우려(cf. 삼성물산)

### 3) 이원화로 인한 소통 공백/지체 : 원-하도급 및 하청업체 간

- 대중소 기업간 조직 내외부를 넘나드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원청 ‘현장관리인 대리인’ (불파 논란은 피할 수 있는 장점) 활용 : 소통단계의 증가로 신속한 소통의 어려움
- 특히 하도급업체 근무환경 개선 요청이 처리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 소통의 지체

## 3. 산재 보상 측면 : 산재 은폐와 지체된 제도

### 1)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 일반재해, 중대재해, 사망재해에 대해서 업체 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관리. 산재 은폐/미보고 조장 우려
- “치료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산재처리를 합니다. 근데 단순 초과상 같으면 며칠 쉬면 나오니까... 그러면 굳이 산재안 하고 병원비 받고 그냥 일합니다”

### 2) 산재보험 적용 불이익과 질병재해 불인정(근속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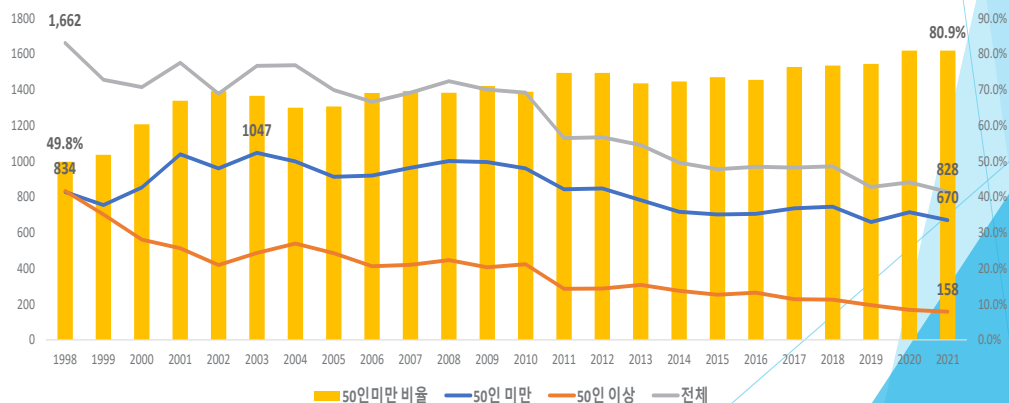
- 산재보험 처리시 (재)취업/재계약에 불리하다는 풍문(사실 여부와 무관)
- “사람이 안 죽고 증상 정도 있죠? 그러면은 (원청) 안전과의 누가 볼까 싶어서 일단 위로 (다친 사람을) 덮습니다. 그러고서는 앰볼런스 안 불러요. (하도급)업체 포터(소형트럭)에 실어서 가깝니다(공장 밖으로 나갑니다)”

## 중소사업장 외국인 고용 증가와 안전문제

- ▶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 형태로 활용
  - 하지만 연수생 신분을 벗어난 불법취업이 빈발
- ▶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허가제’ 시행
  -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한시적 고용’을 전제로 한 외국인 고용
- ▶ 외국인 노동자와 안전보건 리스크
  -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사업장 이탈이 빈번 : 잦은 이직 문제
  - 언젠가 돌아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부재. 특히 중소기업체가 외국인을 다수 활용하면서 교육역량 부족
  - 임시일용직(일당제)로 근무하면서 사업장 전반의 안전문화 수준을 저해할 우려

## 중소기업 사고사망재해 집중 현상

- ▶ 한국의 사고사망자는 1~49인 규모에서 절대다수를 차지
  - 1998년 50인 미만 규모의 비중은 49.8%였으나, 2020년에는 처음으로 80%를 상회
  -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 재해자수의 비중은 1998년 50.2%에서 2021년에는 19.1%로 큰 폭으로 감소.
- ⇒ 기업규모별로 사고사망 중대재해의 양극화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빠르게 감소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 수준),
- ⇒ 소기업들에서는 예산도 자원도 산재감소 의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1,038명에서 2020년 714명으로 300여명 감소하는데 그침 : 산업재해의 이중구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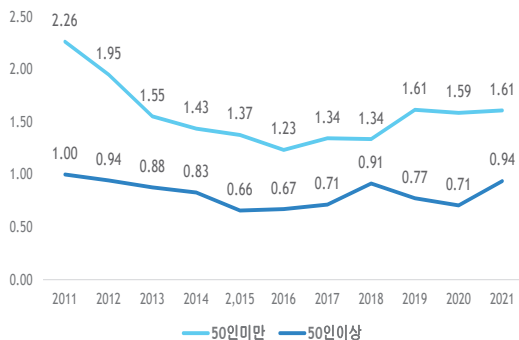


### 3. 중소기업장 예방체계 구축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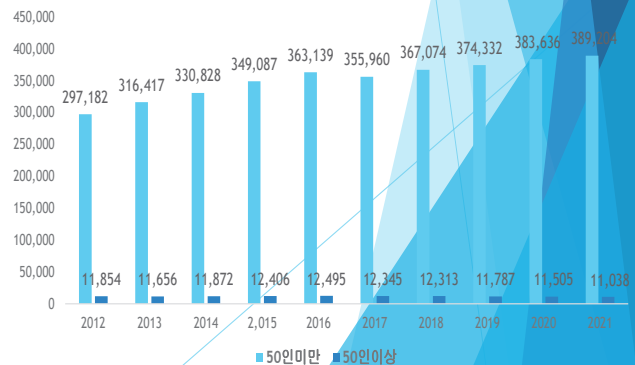
## 중소 제조업의 높은 재해율과 행정관리의 어려움

- ▶ 제조업은 건설업과 함께 재해율이 높은 업종 :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망만인율이 50인 이상보다 월등하게 높음
- ▶ 반면 제조업 기업규모별 사업장 수에서 50인 미만 기업규모가 압도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기준 :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2021년 389,204개 사업장
- ❖ 중소기업장에 대한 행정적 감독 및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

제조업 규모별 사망만인율 추이



제조업 기업규모별 사업장수(산재보험 기준)



##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취약성

### ▶ 경영자 안전리더십

-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자산(asset) 축적이 아니라 비용(cost)으로 생각. 특히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안전예산이 먼저 삭감

### ▶ 안전보건조직체계 운영

-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체제 미형성. 안전관리자 겸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할 간과 : 인력부족

### ▶ 안전보건 전문성

- 인력부족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짐 :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의 어려움. 주로 '대행'에 의존

### ▶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활동

-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 :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형성의 어려움

⇒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에 극복가능할 것인가?

##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커버리지 한계

- ▶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차등적 적용 : 모든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닌 현실

- 5-49인 사업장은 일부제도의 적용 제외, 5인 미만은 대부분 제도의 적용 제외. 특히 임시직 문제와 중점

산업안전보건 제도	중대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측정 및 개선 모두 시행	국고비용지원사업으로 측정으로 무료로 가능하나 개선은 비용부담으로 실행의 한계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모두 시행	국고비용지원사업으로 특수건강검진이 무료로 가능. 하지만 보건관리자가 없어 사후관리의 어려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50인 미만은 외부에서 형식으로 진행
안전/보건관리자	전담인력 배정 및 일부 대행(주로 보건관리)	겸직이 일반적이며 대행업체 지원

## 정부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

- ▶ 아래의 예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
- 하지만 중소제조업체들이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사업명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공단(5-29인) 및 위탁(5-49인) 방식으로 지원 - 주요내용: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컨설팅
유해작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순)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주요사업: 질식재해예방 현장지원,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노출 정보제공, 보건관리 기술지도,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석면취급작업 체계적 관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	- 기술/재정 능력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추락방지 안전시설,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매칭펀드 방식)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프로그램	-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 50인 미만 사업장 중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 내용 : 유해물질 취급작업, 화기 취급, 화학물질 운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 조치 사항 기술지도
건강디딤돌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진단)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

## 도급관계 중소기업 특성과 고용 특성을 반영한 대책의 필요성

- ▶ 앞서 지적한 하도급 관계 특성에서 기인하는 산재위험 요인
  - 도급업체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산재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 Ex) 대기업이 실행가능한 안전보건 컨설팅 프로그램, 위험성평가 제도 등 : 별도의 안전관리부서와 인력이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안전보건체제 구축 프로그램들
- ▶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시일용직 + 인력업체 통한 활용 문제 : 잦은 이직
  - 중소기업 부품사 노동자들의 '빈번한 이직' 이 근로자 건강수준 증진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 요소 :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장 안전문화 형성'에 가장 큰 저해요인
  - 빈번한 이직의 일차적인 원인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 안전보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개선이 필요
- ❖ 1) 원하도급 구조, 2) 인력공급업체 활용(중층고용), 그리고 3) 임시일용직 문제의 증첩(+ 4) 외국인 고용)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중소사업장 과제와 대기업의 역할

- ▶ 중소기업들은 납품형식으로 2-3-4차 하청 관계에 있기 때문에, 2-3차 하청일 경우 장소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원청이 일정하게 역할을 함으로써 -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 등 -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 존재
- ▶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관계가 있는 사내 협력업체 및 사외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원하청 상생을 통한 증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
- ▶ 특히,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장에 대한 책임이 강화
  - 아울러 노동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방안 논의할 필요
- ▶ **대기업이 사내외 도급사들과 공동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우려,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4차 하청 지원에 대한 부담.
  -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와 ‘대기업 적극적인 책임/지원’ 사이의 모순의 문제

## 중소사업장 안전보건문제 커뮤니티 접근

- ▶ 산업안전보건 취약부문(중소 부문 및 비정규/비공식 고용)의 확산에 대해 대기업-원청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 노동조합이 대안? 10인 미만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구분이 무의미. 노조 또한 지속성이 낮음. 노조 이외의 이해대변 기제들을 모색할 필요
- ▶ 사업장을 옮겨다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내 흐름(flow)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 지역 내 노동자 밀집 지역에 노동자들이 회사를 옮겨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post)을 확보(지역 근로자건강센터, 지역 보건소 등) 또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
  - 거점 내에서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안전보호구 및 장비 운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병행될 필요.
- ▶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산업공학-보건의료 차원에서의 대응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 &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원하청관계나 다양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 위험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 ⇒ **사업장 경계를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역-업종 수준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중앙정부 : 안전보건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모든 중소기업장에 정부의 행정적인 손길이 미치게 하는 정책은 한계
- ▶ 자체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 사외도급사나 독립적인 중소기업장의 경우 지역별·업종별 안전관리자 협의회 설립을 지원해서 안전정보 공유 및 역량향상 방안 모색(국가산단 및 지방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것도 가능) : 네트워크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모임비용, 워크샵 비용 등)
- ▶ 아울러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안전담당자 모임도 지원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정보 공유와 소통, 노조의 안전보건 전문성 강화도 필요. 부실한 안전관리 사업장 모니터링
- ▶ *아울러 반복적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 중소기업장을 포함한 중대재해 사례의 체계적인 조사와 사례 공유, 통계 분석 작업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필요*
- ▶ *이와 같은 지역·업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장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체들을 작동할 수 있을 것*

## 지자체 및 단체의 역할

- ▶ 지자체를 통한 지역 단위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
  - 지역의 주요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
  - 2021년 산안법 제4조의 2(지방자체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역 내 산재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투자 및 자원배분 역할을 일정하게 담당할 필요.
  -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지역 내 안전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자체의 추가 예산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장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방안 : 협력체계 구축, 공단 밀집지역, 취약 사업장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 지역 주력산업관련 협회/단체/노조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가 나서는 것에 대해 일선 기업들이 기피
  - 중소기업중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별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중소기업체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지원한다면 접근성을 높이면서 수용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 지역 단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도 포함. 지역 노동조합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수요 파악 및 리스크 모니터링 사업 등을 진행하면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도움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발표 03**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류 현 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전문/산업보건지도사

보다 건강한 사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꿈**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 체류 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만15세 이상)

(단위: 천명, %, %p)

		상주 인구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7)	유학생 (D-2, D-4-1-7)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6)	기타
외국	2022. 5.	1,302	210	97	42	163	374	130	123	165
	2023. 5.	1,430	269	87	46	188	386	131	120	203
구성비	<b>취업자</b> 2023. 5.	923	269	63	46	33	250	98	70	94
	2022. 5.	100.0	16.1	7.4	3.2	12.5	28.8	10.0	9.4	12.7
	2023. 5.	100.0	18.8	6.1	3.2	13.1	27.0	9.1	8.4	14.2
	증감	-	2.7	-1.3	0.0	0.6	-1.8	-0.9	-1.0	1.5

출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3.12.18)

##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이주노동자 취업자

(단위: 천명, %, %p)

	취업자			구성비		
	2022.5.	2023.5.	증감	2022.5.	2023.5.	증감
외국인	843	923	80	100.0	100.0	-
4명 이하	184	202	18	21.9	21.9	0.0
5~9명	160	166	6	19.0	17.9	-1.1
10~29명	240	270	30	28.5	29.2	0.7
30~49명	85	91	6	10.1	9.8	-0.3
50~299명	149	167	18	17.6	18.1	0.5
300명 이상	25	28	3	3.0	3.0	0.0

출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3.12.18)

## 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업무상 재해 추이

	합계			사고			질병		
	신고	승인	승인율(%)	신고	승인	승인율(%)	신고	승인	승인율(%)
2018	7581	7314	96.5	7405	7220	97.5	176	94	53.4
2019	8054	7752	96.3	7777	7600	97.7	277	152	54.9
2020	8062	7778	96.5	7814	7647	97.9	248	131	52.8
2021	8555	8199	95.8	8184	8003	97.8	371	196	52.8
2022	8886	8509	95.8	8497	8285	97.5	389	224	57.6

(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재가공)

- 이주노동자 평균 보상승인율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음
- 질병보상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사고보상신청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음
  -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노동자 사고보상 승인율 : 96%, 질병보상 승인율: 62.9%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 재가공 <https://www.data.go.kr/data/15104688/fileData.do>

# 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업무상 재해 사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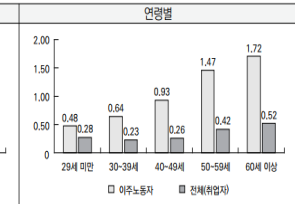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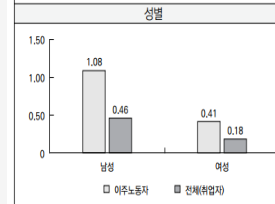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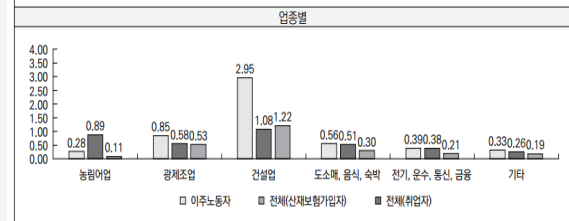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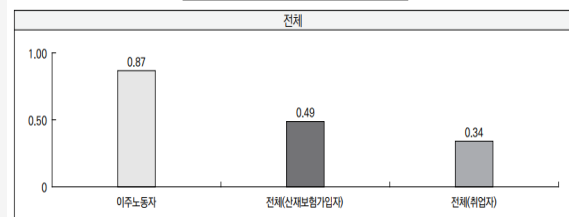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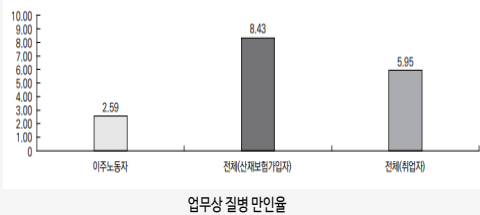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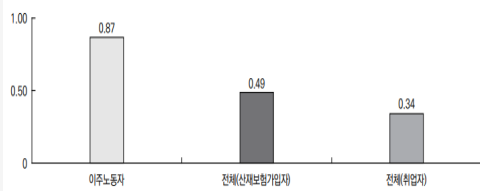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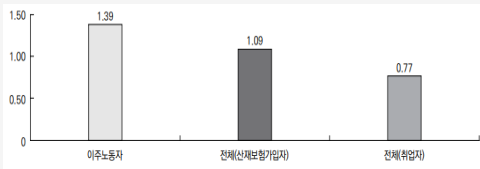
	합계			사고			질병		
	신고	승인	승인율(%)	신고	승인	승인율(%)	신고	승인	승인율(%)
2018	152	126	82.9	120	114	95.0	32	12	37.5
2019	170	138	81.2	127	117	92.1	43	21	48.8
2020	127	112	88.2	98	92	93.9	29	20	69.0
2021	146	122	83.6	107	104	97.2	39	18	46.2
2022	141	109	77.3	99	92	92.9	42	17	40.5

(자료출처: 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 산재현황(2018~2022))

출처)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진(진행중) 자료

# 이주노동자 업무상 재해율 비교

## 업무상 사고 재해율



- 산재보험가입자 통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음.
-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추경한 외국인 취업자 수(귀화허가자 제외)를 분모값으로 활용
- 산재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여 과소추경 가능성이 높음

자료: 통계청 (2020a),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노동부, (2021a),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2020년 기준), 통계청, (2020b),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분석함.

출처) 정연, 이나경,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 02

## 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어선원 재해 사망 추이

	연도합계		사고		질병	
	N	%	N	%	N	%
2018	20	16.5	18	90.0	2	10.0
2019	25	20.7	23	92.0	2	8.0
2020	25	20.7	25	100.0	0	0.0
2021	24	19.8	23	95.8	1	4.2
2022	27	22.3	27	100.0	0	0.0
합계	121	100.0	116		5	

(자료출처: 수산업협동조합 이주어선원 사망승인현황(2018-2022))

-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건의 이주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승인사례가 발생
- 사고로 인한 사망사례가 압도적으로 다수

출처)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진(진행중)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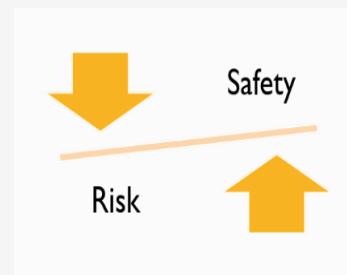
## 왜 일하다가 계속 병들고 다치고 죽는가?

### Discrepancy in risk concept between enterprises and workers

- 노동자의 위험(리스크)
  - 위험 vs. 안전
  - 신체와 정신의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확률
  - 노동자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건강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 기업의 위험(리스크)
  - 위험 vs. 이윤
  - (주로 생산과정의 자연이나 지체에서 오는)이윤 손실의 가능성이나 확률
  - 기업은 이윤손실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위험 관리**



위험(Risk), 안전(Safety), 이윤(Profit)



## 왜 일하다가 계속 병들고 다치고 죽는가?

### Decoupling of workers' risks from enterprises' risks promoted by outdated conventional OHS laws and administrative actions

-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험과 직결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 획득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됨
-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산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가늠하기 어려운 비용을 들이기보다 추정가능한 사후 처리비용 부담을 선택
- 위험이 상존하지만 위험의 책임은 소각되는 법제의 맹점
  - 위험관리에는 필연적으로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영세성을 이유로 관리 영역 외부에 있게 됨
-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의 차등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규정) 구성의무가 없음
  -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을 받을 통로가 없음(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 유일하나 의무는 아니며, 포괄적 개념 설명에 그침)

## 왜 일하다가 계속 병들고 다치고 죽는가?

### Externalization of OHS Risks (Outsourcing of OHS Risks)

- 원청은 책임없이 노동자들의 위험 감수를 통해서 이윤을 얻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
  - 노동자의 죽음에 500만원도 되지 않는 벌금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부재
-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도 못함
  - 맞은 당근과 안 아픈 채찍
- 기업은 제도적 공백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쪼개고, 편법적인 고용계약관계를 만들어 위험을 외주화
- 위험 관리비용이 도급단가로 실현되지 않는 소규모 하청 사업장들은 위험관리 자원이 결여
-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고용, 위험을 무릅쓴 노동이 만연
- 위험의 외주화 → 위험의 이주화(?)

##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와 중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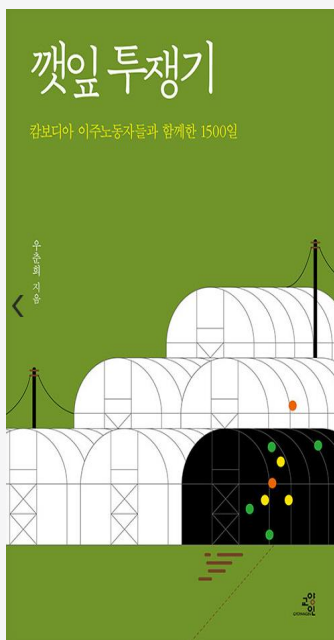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비용(시설, 장비, 적정인력, 관리인력 등)이 소요
  -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관리에 따르는 자원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
  - 사업장의 규모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업주의 의지, 비용투자의 우선순위, 규제 정책의 실행 방식 등의 여러 요인이 결부
- 정부 안전보건 행정 철학의 문제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영세성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면제, 사업들에는 주로 사후적 책임만을 지우며, 사전적 위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제대로 지원하지도 규제하지도 않음 → 책임의 공백
  - 안전·보건에 대한 형식적 책임(처벌)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내용적인 책임(예방)은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
-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
  - 50인 미만인 사업장 수의 98%,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며 산재의 77%가 발생
  - 그럼에도 행정적 규제와 관리의 외곽에 위치시키고 사각지대로 치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 기업들은 공장과 회사를 쪼개기만 하면 규제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의 외주화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짐
- 이 위에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로서의 문제가 얹혀지는 것임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 +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1. 노동자들에게 제도적 권리를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3.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
4. 노출위험의 특성, 노출집단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 콘텐츠의 개발
5. 노/사/지자체/공공·민간기관/중간지원기관 조직 등 접점과 주체의 확장

## 노동자들에게 제도적 권리를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주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설!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합법적 체류기간에 쌓은 전문성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토대 삼아 일손이 부족한 사업주와 노동조건, 주거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온갖 제도와 법이 구속하는 노예 상태에 놓이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는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협상력을 갖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이 심해지자 이런 모순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 우춘희, 깃잎 투쟁기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일터 밖에서는 단속과 추방의 위기로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일터 안에서 빚어지는 온갖 위험과 불합리에 대해서는 억지로 감내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손봐야

-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고용법)
  - **최대 4년 10개월**
    - 일반 고용허가제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간, 재고용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해 총 4년 10개월간 근무 가능
    -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에 영주신청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사업장 변경 제한**
    -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사업장 휴업이나 폐업, 사용자가 계약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 등으로 사용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 2016년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이후 1개월간 사업주가 법령상 적절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
    -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면 출국하게 하는 방식의 법집행은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
  - 고용허가제 → 노동허가제

##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손봐야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관리책임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 위험관리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
    - **위험성평가에 대한 규제도 사업장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임**
  - **도급 금지**
    - 위험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실패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의 중대성,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의 지불 능력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 도입
  - 작업중지권, 작업중지명령의 실효성 강화
    - 위험의 결과에 따른 생산과 유통의 중단/지체에서 오는 손실을 통해 원청의 예방 활동을 강제하는 방법
    -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명령 실효성 강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제적 처벌 효과를 극대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유일한 조항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손봐야

### • 건강보험

- 소규모 영농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농업이주노동자들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안되고 비용부담이 높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 비용부담으로 건강보험 미가입 → 의료접근성의 저하 → 건강 불평등
- 건강보험제도의 보완 혹은 외국인 고용법의 개선

### • 산재보험

-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농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적용되지 않음
-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은 여러 편법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감
- 이주노동자 고용 자영농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제도의 실효적 적용이 가능할지 판단

##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손봐야

### • 비제도적 배제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 영미권 백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지만, 노동현장의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반말이 기본
-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머슴' 부리듯이
-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성적 차별과 중첩되어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
-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문제

### •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법제도적 규제

- 자신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과 착취의 왜곡되고 부끄러운 이면을 숨겨 온 공간은 어디나 문제적 - 군대, 장애인 수용시설, 염전, 인적 드문 농어촌
- 문제를 파악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서로 경계하고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
-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을 모두 법에서 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기업이나 사회 특정 부분의 인식이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면 법으로 정하고 규율
- 입법이나 법 개정을 요구한 사회적 요구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 위험의 성격과 책임에 대한 고찰



## 위험의 성격과 책임

### • 알려진(既知, known) 위험

- 위험요인의 특성, 노출 결과, 관리방법이 알려진 위험
- 사업주가 알고 있는 위험: 사업주가 몰랐다고 할 수 없도록 기록, 전달
- 책임은 사업주, 기업
  - 위험을 확인하고도 노동자나 관리감독자만 알고 사업주가 알도록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책임이 될 수도
  -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이 의사결정구조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 제거
- 예견된 위험 관리 소홀의 결과는 강력 처벌
- 자기규율(self-regulation)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노동자 참여: 알 권리 → 작업중지권 → 가장 적극적 참여로서 위험성 평가

### •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

- 위험요인의 특성, 노출 결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
- 숨겨진 위험: 노출, 노출 결과, 관리 미비가 은폐되어 알려지지 않은 위험
- 책임은 정부, 국가
  - 사업주가 위험을 인지하고 책임을 인지하도록 만들어 알려진 위험으로 바꾸는 것 까지 정부의 책임
  - 위험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 - 규제와 지도·지원의 균형점을 찾아야
- 안전보건 행정 시스템, 관료의 역량(competence)
- 국가 수준의 위험성 평가, 우선 순위의 선정
- 모든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고 규제하기에는 한계
- 직종, 업종, 산업 수준의 자체 실행 규범 제출 지원·유도(직종조합, 업종연합회, 산업별 협회)

##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

- 취약계층이 된 근원적 요인에 대한 접근없이 산업보건 서비스의 기술적 접근 만으로는 변화가 쉽지 않음
- 안전보건 취약성 극복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기술적 접근과 병행하거나 우선해야 할 필요성
-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 안전보건 취약성을 구성하는 개별 요인들의 수준과 중첩을 확인, 제도 개입을 통한 정책의 다중 효과 등을 판단
  -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커버리지 수준 등을 예측하고 개입해야
  - 목적 의식적이고 단계적인 개입과정 속에서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적정 지원 향상시켜야 할 것인지, 적극적 규제를 통해 관리수준의 향상을 강제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진입장벽을 세우고 배제할 것인지 가릴 수 있어야
  - hazard, exposure(provability), severity, competency 고려 → 규제, 지원, 제거, 대치
  - 위험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필요
  - 위험이 작은 사업장으로 전가되고 영세성을 이유로 작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유예하고, 사양산업으로 자연도태되기를 기다려서는 안됨
  - 위험의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손상과 질병, 죽음으로 나타나게 됨
  - 산재발생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인 관리나 감독이 아닌 중장기적 관리 목표에 기반한 기획 감독이 필요함



##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정부가 파견사업주

### 1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주에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전단 및 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사용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 ▶ 사용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정부가 파견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용자 책임의 부담



## 1 사용자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자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
- 사용자사업주는(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Seq=1390&ccfNo=3&cciNo=2&cnpClsNo=3>

#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정부가 파견사업주

## 1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 (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자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사용자 책임의 소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파견사업주 및 사용자사업주의 공동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li> </ul>

-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Seq=1390&ccfNo=3&cciNo=2&cnpClsNo=3>

## 정부는 최소한 파견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 고용허가제 취업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반복적 산재가 발생했거나, 혹은 산재 은폐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추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제약을 두는 제도나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 현행 고용허가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현장실습생 사업장 지도점검 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이주노동자 지원조직이나 국가별 이주 공동체와 연계하여 고용허가제 취업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자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방안

##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 참여의 확장과 원천 규제

참여의 확장 : 알권리 → 작업중지권 → 위험성 평가 참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것들 성취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친 관행의 변화가 필요함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항상 Fail Safe, Fool Proof의 원칙이 작동해야 함.  
 위험한 물질과 기계·기구는 유통을 차단! 관리할 능력이 없는 위험작업은 도급금지!  
 기초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없으면 진입장벽을!

##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

###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의 제공\_지원과 규제

- 효과적인 지원과 철학을 가진 규제
  -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에 대해 커버리지 수준 등을 예측하고 목적의식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 이것은 개별 사업장 단위의 위험성평가가 아닌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행정기관이 필요함
  - 현재 위험 관리에 필요한 조건과 자원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정 지원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지 평가하고, **지원 혹은 배제/전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 위험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필요
    - 위험이 작은 사업장으로 전가되고 영세성을 이유로 작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유예하고, 사양산업으로 자연도태되기를 기다려서는 안됨
    - 위험의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손상과 질병, 죽음으로 나타나게 됨
    - 산재발생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인 관리나 감독이 아닌 중장기적 관리 목표에 기반한 기획 감독이 필요함
- 국가수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업종, 기계 기구 등 기획 감독의 대상의 제시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도록 안내
- 유예기간이 끝나면 선처없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

##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의 제공\_비용부담

- 모든 이윤에는 위험관리 비용을 부과
  - 직접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이나 원청 기업은 산재보험료 혹은 위험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윤만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 예방이건 보상이건 포괄대상을 넓히기 위한 비용,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생태계의 상위 기업에게 부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 건설업에서와 같이 별도의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게 산재보험료 부과
  - 플랫폼은 수수료 산정과 지불을 위해서 노동과정을 꼼꼼히 기록, 저장할 것이므로 매출 건수나 비용에 따른 부과율 산정 가능할 것
  - 건설업 발주자에게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제조업(완성차기업, 선박 발주사 등 end product 기업 중심), 택배서비스 사업자,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
  -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등의 논리 형태로 안전부담금, 위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정부, 지자체가 작은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인력에 투자하는 방식

##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의 제공\_효과적 지원

- 정부의 작은 사업장 지원 사업은 목적과 방향이 없는 퍼주기식 금전 지원이 대부분이었음.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우선 순위 선정도 없이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지원책을 구사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작은 사업장의 위험관리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국가, 정부, 지자체 각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획하고 수행할 **건전한 안전보건행정조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공공 직업안전 및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 안전보건공단의 예산과 자원에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전문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을 고민해야
- **산업단지,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모색**

##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의 제공\_ 지원 조직 운영의 정상화와 확장

### • 근로자건강센터의 경험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일한 공공 직업건강 서비스 기관
- 건강 상담을 위주로 한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야
- 작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지원, 개입
- 건강디딤돌 사업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직접 연계
- 작업환경개선이 지원에서도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면 클린 사업장 지원 우선하고 사업주부담금 면제하는 등의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 국고 기술지원 사업의 기획 관리 역할, 사업 수행요원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연계 등
-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정부와 공공의 직업건강 지원 자원과 비용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수준으로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지자체의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 노동안전보건 혹은 산재예방 기본 계획 수립, 위원회의 구성
- 노동(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의 지원 조직 설립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 기존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전망 창출이 필요

노출위험의 특성, 노출집단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  
컨텐츠의 개발

# 교육과 정보전달 체계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인자는 사업주**
  -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모든 사업장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참여에 기반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핵심
  - **사업주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이 필수**
  -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존재하지만 막상 **사업주 자신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음**
  - 50인 미만(20인미만)/5인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를 둘 필요도 없는 상황
  - 식당을 하더라도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식품위생법)을 받는데...
-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교육과 정보 전달 체계 구성
  - 당장에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관리를 위한 비용과 자원을 갖추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주들이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가 그들의 손에 닿게 만들어야 한다.
  - 세부 업종별 구분 없이 포괄적인 법령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업종별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
  - **직종, 업종, 산업 수준의 자체 실행 규범 제출 지원·유도(직종조합, 업종연합회, 산업별 협회)**

# 교육과 정보전달 체계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이 다이어그램은 안전보건교육 체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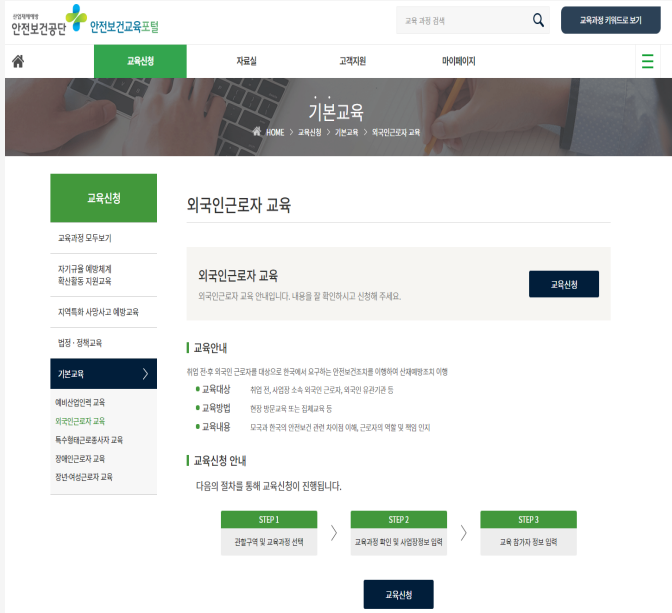
- 근로자 교육:** 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건설업 및용근로자. 각각의 교육 내용과 시간(예: 일반근로자 3시간, 관리감독자 4시간)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직무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련 업무 종사자. 직무별 교육 내용과 시간(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시간)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특고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화물차량 운전자. 특고종사자별 교육 내용과 시간(예: 플랫폼 기사 1시간)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이 스크린샷은 안전보건교육포털의 메인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메뉴와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신청:** 교육과정 목록보기,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 할 경우 산재보상률을 10% 인하. 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사업주. 교육시간: 4시간.
-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 대상 교육. 대상: 전 업종 사업주. 교육시간: 2시간.
- 중소규모 산재사업장 사업주 교육:** 사업주의 책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이해 등을 위한 교육. 교육시간: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관계자)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사업주, 담당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지원. 교육시간: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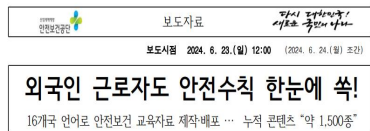
# 교육과 정보전달체계



- 고용허가자 이주노동자는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2박 1일간(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되며, 산업안전보건 역시 교육 내용에 포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총 4시간 정도로 매우 짧은 데다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 작업 현장을 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 김그루,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2차 이주민 포럼 자료(2021. 6. 7.)(정연, 이나경.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 02 에서 재인용)

# 교육과 정보전달 체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언어문제에 따른 산업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국어 직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은 인력 16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다.

- 내물, 동티모르, 리오스, 홍콩,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영어)

아울러,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증가와 재해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작업별 안전 작업방법을 담은 '조선업 안전작업 안내문(OPS: One page Sheet)'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자료 9종을 제작하여 함께 제공했다.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쉽게 활동도록 주체로 요령위주로 구성된 교육자료로서 한글자료는 공단에서 개발하고 외국어 번역은 조선해양안전협회·산업안전공단에서 협업

공단에서 개발된 외국인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유튜브, 미디어 현장방송,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 공단 누리집(kosha.or.kr): 자료미명 - 통합자료실 - 전체자료실 - '외국인근로자' 섹션 유튜브(youtube.com/koshamovie): 재생목록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미디어 현장방송(media.kosha.or.kr): 대상별 - '외국어' 섹션

##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자료(24년 상반기 공개)

콘텐츠	유형	언어	비고
용접·용단작업 화재사고 예방	동영상	10개	용접 화재사고 예방
안전보건 숏폼	숏폼	16개	지게차 ①, 팔이팔 ②, 부딪힘, ③, 단부 떨어짐, ④, 화석물질중독, ⑤, 밀폐공간질식예방
조선업 안전작업 가이드	OPS	14개	① 웨이어프사용 및 제거 ② 벨트슬림 안전작업 ③ 편지그 안전작업 ④ 비계 안전작업 ⑤ CO 용접 안전작업 ⑥ 웨이어스 스프레이 펌프 안전작업 ⑦ 트랜스퍼드 안전작업 ⑧ 잠진 재해예방 ⑨ 보류구 적용법

올해 하반기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등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 지게차 안전작업 안내문(OPS)' 4종을 16개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도 안전수칙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안전보건 포스터'와 '안전보건교지 피드백'을 추가로 제작하여 조선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국내 취업교육기관의 외국인 의무교육 시 안전보건 전문 강사 및 교육을 지원해 왔다. 또한 외국인이 다수 종사하는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지역행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체험교육'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 ('23년) 실시 횟수: 444회, 사업장 수: 438개, 교육 인원: 29,338명

공단 안중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라면서,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국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교육혁신실 교육콘텐츠부	책임자	부 장	정정자 (052-703-0730)
		담당자	차 장	장신영 (052-703-0732)



## 교육과 정보전달 체계

---

-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교육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닿도록 하는 것
  - 안전보건공단 자료는 내국인,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검색하기도 만만치 않음,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검색을 통해서 해당자료에 접근하기는 어려움
- 누가 사용할 것인가(사업주, 안전보건 담당자, 지원조직, 이주노동자 당사자)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있어야 함
- 안전보건공단 위험경보(KOSHA ALERT)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사업주나 안전보건기관에 전달되지만 노동자(정주노동자 포함)들에게 직접 도달할지는 의문
- 최소한 중대한 위험경보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국가들의 언어에 대해서라도 번역해서 다양한 경로로 유포하는 것이 필요



노사체/공공·민간기관/중간지원기관 조직 등 접점과 주체의 확장

---

## 노/사/지자체/공공·민간기관/중간지원기관 조직 등 접점과 주체의 확장

### •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모색

- 산업단지 등 제조업 밀집 사업장부터 우선 구축
- 국가수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고위험 사업장 선별 → 규모, 업종별
- 선정된 고위험 사업장의 알려진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 개선자금 지원, 규제, 처벌, 진입장벽 형성 등 위험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대응방안을 구성하고 공표
- 규모, 업종, 위험관리에 요구되는 기술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인적 자원을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 감독 및 지원 행정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자조 조직을 연계해야
  - 근로자건강센터, 민간전문기관, 지자체, 노동복지센터/안전보건센터/안전지킴이 등 지자체 운영 지원조직, 국가별 이주공동체, 공제조합 등 자조조직, 이주노조, 명산관 등의 제도를 통해서 이주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전보건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로 편입
-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자료, KOSHA ALERT 등을 적재적소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주공동체, 이주노동자 지원 조직, 기타 비공식 소통채널까지 포괄하여 접근성을 제고해야

##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발전기를 돌리고 도시를 밝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하청의 하청, 재 하청 노동자들의 뼈와 살점을 반죽하여 건물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이주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거름으로 농작물을 길러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질병과 손상의 대가로 쌓인 이윤을 아무런 책임 없이 걷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cactus626@gmail.com



**발표 04**

## **피해자 지원 대책**

**정 경 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피해자 권리 보장팀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



# 아리셀중대재해참사 재난대책에서 나타난 피해자 권리의 문제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 피해자권리보장팀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

## 들어가며

피해자 권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 피해자가 요구하고 싸워서 만들어낸 권리이다.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아리셀중대재해참사 재난대책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권리의 문제를 다루고 개선대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 현황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경 (주)아리셀 리튬전지 화재로 인해 23명 사망, 8명 중경상
- 소사체로 발견된 17명 신원불명으로 국과수 DNA검사를 통해 6월 27일 신원확인, F-4 제외동포비자 12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 내국인 6명

## 2. 정부와 지자체의 유가족 지원 현황

### (1) 화성시와 경기도

화성시청 내 통합지원센터(입국지원, 보상지원, 통역지원) 24시간 운영  
사상자 안치 및 입원시설 시 직원 1:1 매칭(경기도 1명, 화성시 1명, 경찰 1명)

사상자 및 유가족을 위한 각종 법률상담 지원

심리지원(재난 심리지원 안내지 통한 심리지원)

추모분향소 운영(화성시청 본관, 병점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경기도청 남부, 북부 08시~22시 운영)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유가족 지원시설 5곳, 상담실 1곳)

피해가족 지원실 : 모두누리센터 2층 세미나실

장례지원반·유가족대책반·외국인지원반 등 13개 반 구성

유가족 지원 안내서 제작

경기도 이주노동자 희생자 지원(유가족 항공비, 체류비, 통역, 심리상담지원)

경기도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견 표명

## (2)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팀' 구성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비상대책반 구성(신원확인,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은 대부분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보고 7차례 진행(화성시, 경기도, 정부 지원현황)

## (3) 아리셀

아리셀 대표 박순관 사과문 발표

대책위와 사측 1차 교섭 30분 만에 종결 이후 교섭 노력 없음

피해가족에게 정보 오류에 근거한 보상 관련 개별 문자 발송

## 3. 아리셀 재난 대책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 (1) 정부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참여할 권리

재난피해자들이 처한 조건, 환경, 상황을 고려한 대책과 재난 참사 해결 전 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노동부, 국과수, 경찰, 소방 정부기관은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해조사에서 피해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피해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중간수사 브리핑도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에 피해가족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고용노동부는 브리핑 자리에 유가족 외에 대책위 관계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으며 피해가족이 개별적으로 방문하면 알려주겠다고 공지하였다.

경기도와 화성시 재난지원본부도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7월 3일 피해가족 공동공간에 들어와 일방적인 브리핑을 강행하였다. 그 후에도 월,수,금 브리핑을 하지만 피해가족협의회와 사전 조율이나 의사 타진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위임 서류를 내밀기도 하였다. 재난·참사 피해자는 가족들이 왜 어떻게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 알 권리가 있지만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연대하고 조력 받을 권리**

피해자들은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단체의 조력을 얻을 수 있으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 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월 30일 유가족협의회, 7월 2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법률대리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지자체는 유가족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아리셀 사측은 1차 교섭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더니 개별 피해가족에 대해 합의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아리셀은 피해가족협의회와 대책위를 인정하고 소통하여 피해자의 참여하고, 연대하고,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 **(3)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재난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례에 관한 권리이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해 기업주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추모제가 시작된 첫날 화성시는 일대일 매칭 공무원을 통해 시민추모제가 취소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피해가족들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였다.

시민추모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민과 유가족의 추모행동을 방해하였다. 또 2회차 추모제를 지나면서 유가족과 시민이 적어놓은 추모의 벽 메시지와 꽃다발을 일언반구 없이 제거하였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정은 일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갖게 만드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인권 또한 침해받고 있다. 지자체와 아리셀은 피해가족과 시민의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보장

하여야 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이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4) 이주민 피해자의 특성과 취약성에 맞는 지원 받을 권리**

화성시는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피해가족의 숙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7월 3일 지원 기준을, 직계의 경우 7월 31일, 친족의 경우 7월 10일까지로 지원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예산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참사 피해자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의 동포이다. 이들 중에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입국한 유가족도 있고, 산아제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가족관계의 문화적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가족에 대한 숙식제공 기준은 고물가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인의 기준에 맞춘 지원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한국에 체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 및 소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구호계획 수립에 있어 피해가족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근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가 그러하고,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가 그러하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에 닥친 피해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상황 행정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재난은 국적, 신분, 나이, 처한 조건 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재해구호계획에만 명시되어 있는 지침이 아니라 재난 해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과 피해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나오며**

이번 참사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주민입니다. 피해자가족 중 70% 정도는 한국어로 소통이 어렵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브리핑에만 통역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특히나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따가운 여론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이 이를 더 심각하게 키우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원액수나 규모만을 여론화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과 혐오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일지별 경과

일자	중앙정부	지자체(경기도,화성시)	아리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	피해가족협의회
6월 24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소방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소방청장, 중대본부차장, 행안부장관, 윤석열대통령 화재현장 방문 -재난구조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화성시통제단 가동(소방청) 긴급 구조통제단 가동,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화성시 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센터 가동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현장도착 -재난구조과장 파견 심리회복지원 활동 시작(경기도심리회복지원센터)	리튬전지폭발화재 발생시킴	(주)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칭) 준비간담회	
6월 25일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아리셀 공장 전체 작업중지 명령 및 공장 관계자 3명 입건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업체(5개소) 압수수색 -희생자 신원확인		아리셀 대표 박순관 사과문 발표	(주)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6월 26일		-화성시 분향소 설치 -경기도 남부청사 분향소 설치			
6월 27일	-희생자전원신원확인	-지역사고수습본부 합동브리핑 -경기도 북부청사 분향소설치	박순관 아리셀 대표 유족 만나서		

6월 28일		- (경기도의회) 긴급 간담회 진행 - (화성시) &유가족 간담회 진행 - (화성시) 산업안전본부 신설 추진	사과 시도		-유가족 입장 브리핑 (기자회견) -유가족협의회 구성
6월 29일		시흥시 합동분향소 설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 위원회_회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 위원회 유가족 간담회 진행	
6월 30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b>유가족협의회</b> 기자 회견
7월 1일	- (경찰) 참고인 조사 완료 - (중수부) 외국인 산업안전 강화안 발표 예정 - 검찰 수사	-화성시 유가족에게 추모제 취소 연락 및 추모제 불허 -경기도 이민사회국 신설 계획		화성시청 본관 앞 첫 시민추모제	
7월 2일				-대책위 회의 진행 <b>-대책위 요구안/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b> -대책위 법률지원단 유가족 설명회 진행 -두번째 시민추모제	
7월 3일		- (경기도) 도지사 기자회견 진행 - (경기도)아리셀 긴급생계비 지원 <b>- (화성시) 일방적인 유가족 지원 안내서 설명</b>		-온라인 추모 공간 오픈 - (대책위) 전국산단 제보 현수막 설치 -세번째 시민추모제	

7월 4일	-아리셀 화재 피의자 소환 예정 -부상자 4명, 긴급생계비 지원	-모두누리센터 지하 2층으로 분향소 이동 발언	-피해가족협의회와 대책위 직접 영정 및 위패 안치 -네번째 시민추모제
7월 5일	-남부경찰청 8일 방문 연락 및 화성시 오후 2시 설명회 진행 제안 -중구총영사 유가족협의회 방문		-유가족&대책위 : 사측 교섭, 30분 만에 결렬 -유가족 회의
7월 6일		(경기도) 리튬 사업장 안전점검	-하늘색 리본 제작 -다섯번째 시민 추모제
7월 7일		화성시장 부상자 의료지원 발언	-유가족 위임서 작성
7월 8일	-(경찰청) 수사내용 설명회 진행 -고용노동부 불참	(경기도) 긴급생계안정비 부상자 지급	여섯번째 시민 추모제
7월 9일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화성시청 시장실 앞 농성 시작 -일곱번째 시민 추모제
7월 10일	경찰 2차 압수수색		-고소 고발 기자회견 -농성장 철수 -여덟번째 시민추모제

7월 11일		숙식 관련 화성시, 대책위 면담	아리셀 보상 문자 발송	아홉번째 시민추모제
7월 12일	DNA 감정결과 및 유류품 전달	-화성시 중대본 해체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 예방 개선 방안	아리셀 합의안에 "강제퇴거 대상"적 시	열번째 시민추모제
7월 13일		화성시 화재사고 예방 제도 개선 논의		
7월 14일				-한의사, 물리치료사 진료 진행 -추도식
7월 15일	금속회재 예방법 발의	화성시 정책실장&대책위 면담		-네 명의 고인에 대한 발인식 -열한번째 시민추모제
7월 16일		-화성시 복지정책팀장&대책위 면담(숙식 관련 최종 정리 진행)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긴급생계비 지원 완료		-피해 가족 분향소 조문객 맞이 시작(평일 2시 ~ 5시) -열두번째 시민추모제

**발표 05**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요구 발표**

**박 세 연**  
공동집행위원장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요구

박세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은 정부 통계로만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도 매년 100명이상씩 발생하고 있음.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 다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의 일터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의 죽음임.

## 첫째,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가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방치가 불러온 집단 참사

이번 참사로 아리셀은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이 진행된 사업장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실제로는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되면서도 아리셀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 적용제외 되었음.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유예 대상이 되어 2024년 1월부터 적용대상임.

이는 사업주의 위장도급과 쪼개기 계약에 의한 것으로 리튬 배터리와 같은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됨. 제조업 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 파견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파견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파견 노동이나, 하청노동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최소한의 안전교육, 안전정보 제공도 받지 못함.

2015년 인천 부천의 산업단지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함. 이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감독 없이 방치함.

이번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유사업종의 안전점검과 감독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참사가 발생한 전곡 산업단지나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감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파견법이 불법파견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둘째, 그야말로 무대책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이 불러온 최대의 집단 참사**

매년 사고 사망이 800명 내외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사망이 수년째 100명이 넘게 발생해 왔음. 이주노동자는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취약한 안전보건 구조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라는 이중 삼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 그러나, 입국 시의 포괄적인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위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쌓여 있는 십 수개 국가의 안전보건 표지, 교육자료는 정부기관에만 쌓여 있을 뿐 현장에는 전달체계가 없음. 이에 정부에 이주노동자가 직접 일하는 현장의 위험에 대한 교육 실시방안 마련을 수년째 요구해왔으나 방치한 결과가 아리셀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참사임. 이는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대 중대재해 발생 업종인 건설업, 올해 상반기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조선업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 차례 위험 경고에도 방치하여 최악의 화학폭발사고 발생**

빈번하게 발생한 리튬 배터리 사고와, 군 납용 제품의 연속적인 폭발사고에도 점점 감독과 대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음. 특히, 위험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나 화재 발생 시 대책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대책이었음.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도에 비해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거나, 하도급을 제한 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음.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아리셀은 1차 전지로 수 십년 생산이 진행되어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이 아님에도 위험의 완전한 방치로 참사로 귀결됨.

### **넷째, 맹탕인 정부의 관리 감독,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 온 참사**

아리셀에서 수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위장도급 불법과건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 비상구 설치조차 없었으나. 노동부 감독은 전혀 실시된 바가 없음. 오히려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음.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임. 고 위험 사업장이고 각종 불법과 안전관리의 방치가 횡행한 사업장임에도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인증을 통해 예방활동을 잘하는 사업장으로 포장됨. 맹탕인 정부의 감독, 위험성평가 인증제도가 불려온 참사이며. 정부가 핵심대책으로 주장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사임.

##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진상규명, 보상,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현실이 결국 집단 참사로 이어짐**

매년 100명인 넘는 이주 노동자가 죽어 나갔음에도 사고 원인 조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 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의 문제가 제대로 조사하고, 밝혀지지 않았음.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으로 와서도 체류비 문제, 언어소통에 대한 지원, 같은 사업장의 동료들 만나는 등 아무런 지원책이 없었음. 1-2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노동부나 경찰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조차 제공되지 않았음. 이에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조사와 대책 수립 없이 반복 발생해 왔고, 이러한 현실이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로 귀결됨.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 이주 노동자 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의 피해자 유족에게 사고조사의 참여나 정보 제공은 제한되어 있음.

## **2. 대책위 요구안**

### **1)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 **① 각 정부 부처는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피해자권리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재해조사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셋, 각 정부 부처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전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넷, 희생자, 부상자 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모임 권리를 보장하라.

## ②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요구한다.

하나,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라.

둘,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를 지원하고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셋,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및 생존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넷,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③ 화성시와 경기도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관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제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및 유사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라.

셋, 아리셀과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2)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

### 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와 서류 작성만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관리로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폭발사고 발생했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사항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조항 신설하라

### ②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책임지고 전수조사하여. PSM 도입, 하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위험 대책 마련하라(군사시설 포함)

하나, 화재폭발위험이 큰, 리튬전지 산업에 대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하라.

둘,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전면금지하라

셋, 기술 안전 표준을 공개하고 기업책임 의무강화하라

넷, 리튬, 염화티오닐 등 리튬전지 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

### ③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하라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해 온 모기업 에스코넥 포함)

또한 무분별한 불법인력공급 업체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파견법 폐지를 포함한 간접고용 관련 법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 ④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라

또한 유가족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하고 가족 및 대책위에 정기 보고하라.

### 3)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

○ 이주노동자 주로 일하는 중소기업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지원 강화

- 중소기업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안전장비 개선 지원 확대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고용노동부와 유관부처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에 산업안전 교육 확대

- 업무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을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을 위한 통번역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안전한 기숙사 보장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개정으로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하고 위험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숙소(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전면 금지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설치

- 내국인 세 배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율을 줄이고 산업안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대책부서 설치



**토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고용노동부**



---

---

**토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환경부**



---

---

**토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화성시**



---

---